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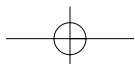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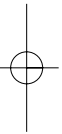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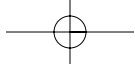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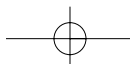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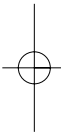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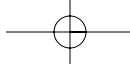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권영진

아아 아름다운북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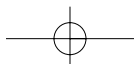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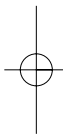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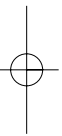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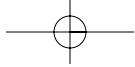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일시 | 2009년 2월 3일 화요일

장소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최 | 아름다운재단

주관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CONTENTS

01 주제발표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07
	박 훈,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02 종합토론	좌 장 박태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115
	토론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前 한양대 교수)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前 국세청장, 前 행정자치부 장관, 前 건설교통부 장관)	
	전재현 (월드비전 후원개발본부장)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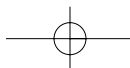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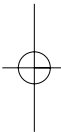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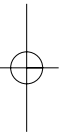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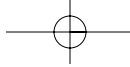
01


주제발표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박 훈,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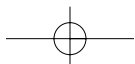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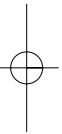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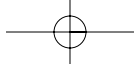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CONTENTS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18
	제3절 연구범위	18
제2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그 현황	19
	제1절 기부의 법적 의미	21
	1. 기부의 민법상 의미	21
	2. 세법상 의미	22
	제2절 기부의 현황	24
	1. 기부에 대한 통계	24
	2.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26
3. 시사점	31	
제3장	기부에 대한 현행 법제도	33
	제1절 기부방법 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제도	35
	1. 기부금 교부 방식의 다양성	35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40
	3. 기부금 제공 방식의 다양성	49
	제2절 기부금 세제의 재분류	53
	1.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의의와 종류 등	53
	2. 한도액 계산 방법	55
	3. 기부금 재분류	55
	제3절 기부조직의 투명성	56
	1.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57
	2.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58
	3. 기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	58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강화	59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	59	
6.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및 질문·조사 근거 마련	60	
7.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61	

8.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62
9.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62
10.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	63
11.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 완화	64
제4절 기부자 및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제재	65
1. 기부단체	65
2. 기부자	69

제4장

기부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71
제1절 기부 관련 주요국의 세제혜택의 비교	73
1.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표	73
2.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검토	78
제2절 기부방법의 다양화	79
1. 기부금 교부방식의 다양성	79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80
3. 기부금 제공방식의 다양성	80
제3절 기부금의 재분류 등	81
1. 세금우대의 자격 취득 절차	81
2. 공제범위	86
제4절 기부조직의 투명성	86

제5장

기부 관련 법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89
제1절 기부방법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91
1. 평가	91
2. 개선방안	92
(1) 다양한 기부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92
(2) 현물기부 부동산 등 관리의 용이성 제고	93
(3)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 폐지 또는 완화	94
(4) 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인정	96
(5) 자산공제 방법의 인정등	97
제2절 기부금 재분류	98
1. 평가	98
(1) 법정·특례·지정기부금 분류의 타당성	98
(2) 각 공제한도의 적정성	98
(3) 종교단체 기부금 비율의 과다	99
2. 개선방안	100
(1) 지출 기준에 따른 기부금 재분류	100
(2)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의 구분	100
제3절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101
1. 평가	101
2. 개선방안	101

(1) 공익법인 규모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감독 방법	101
(2) 기부금 수입과 그 사용내역의 공시화	102
(3) 공익법인에 대한 관계법령의 단순화	102
(4) 회비 등 공익법인 지정 및 취소 사유의 완화	102
제4절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 구축	103
1. 평가	103
2. 개선방안	103
(1)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의 인정	103
(2) 기부 받는 단체의 설립요건 완화	104
(3)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	105
제5절 기부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개선방안	106
1. 기부를 한 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의 간소화	106
2. 기부금 소명자료 제출 전산화의 조화문제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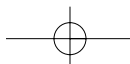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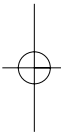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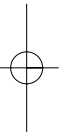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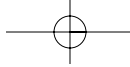
제6장

결론 : 정책적 제언	109
--------------------	------------

참고문헌	113
------	-----

표목차

[표 1] 기부자 유형별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 추이	25
[표 2] 기부자 유형별 기부금 추이	25
[표 3] 2005년 기부공제 인원 및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25
[표 4]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특별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대상	54
[표 5]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특별공제) 한도액(2008년 귀속)	55
[표 6] 미국(Arizona주)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3
[표 7] 캐나다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4
[표 8] 인도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5
[표 9] 싱가포르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5
[표 10] 프랑스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6
[표 11] 브라질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6
[표 12] 헝가리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7
[표 13] 포르투갈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77
[표 14] 미국 연방세법 501(c)(3)조의 유형별 단체 현황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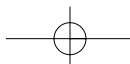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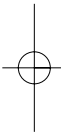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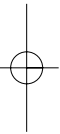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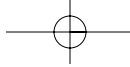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목적1

제2절 | 연구방법2

제3절 | 연구범위2



제1장 | 서론

○● 제1절 | 연구목적

2007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기부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를 둘러싼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이 기부가 활성화된 외국과 비교하여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와 관련한 세제를 비롯한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역시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여야 하는지, 제도 변화가 먼저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를 피하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계기로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의 계기 마련

-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부각 : 단순히 국가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복지차원의 측면을 넘어서는 기부의 역할을 강조. 기부는 국가가 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국가기능의 보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고려.
-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불식 : 부의 세습이나 조세회피의 방법으로 기부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모색
-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법제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함 : 국가 역할 대체 더 나아가 국가 역할의 보완 및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활동 가능 등 기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조세회피 등 부정적 시각이 교차하면서 기부에 대한 법제도가 복잡해지고 법제상 지원이 제한을 받고 있음.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힘을 얻는다면 기부관련 법제도의 단순화와 기부에 대한 법제도차원의 지원확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 기부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기부자 뿐만 아니라 기부단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 기부자 지원을 위한 세법상 개정방안
- 기부단체 지원을 위한 세법상 개정방안 : 기부단체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기부자의 기부목적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제2절 | 연구방법

- 주로 문헌조사

○● 제3절 연구범위

- 기부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 선행연구 :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설문조사, 기부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의 큰 틀의 구성, 기부에 대한 외국 입법례의 소개
- 본 연구의 초점 : 기부 관련 세법의 실제적인 개정안 제시

- 제2장에서는 기부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기부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기부방법 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제도, 기부금 세제의 재분류, 기부조직의 투명성, 기부자 및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제재라는 측면에서 기부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기부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나라별로가 아닌,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의 틀에 맞추어 비교 검토한다.

이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5장의 기부 관련 법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에서는 기부방법 개선, 기부금 재분류,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 구축, 기부절차의 간소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의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근거와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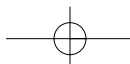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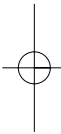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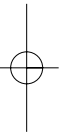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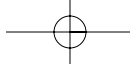
제6장에서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제2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그 현황

제1절 | 기부의 법적 의미

제2절 | 기부의 현황



제2장 | 기부의 법적 의미와 그 현황

○● 제1절 | 기부의 법적 의미

1. 기부의 민법상 의미

국어사전상에서는 기부(寄附)를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가없이 재산의 이전이 있다는 점에서 민법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례로는 민법상 증여, 유증을 들 수 있다.

(1) 증여

민법상 증여(贈與)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44조). 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의 수령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민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데 본질이 있고 그 동기는 따로 묻지 아니한다. 이 때 “무상”이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수증자가 어떤 부담이나 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그것이 증여자의 재산수여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무상으로 증여가 된다.

민법상 증여가 되는 “재산”에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있다. 자기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재산도 증여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을 수여하는 행위에는 동산 및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 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 및 포기, 채권양도 및 채무면제, 타인의 채무면제, 타인을 위한 채무부담 등이 있다.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도 재산을 수여하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기부의 다양성은 기부의 법적 형태인 민법상 증여(계약)의 경우 증여되는 재산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수한 증여계약의 경우처럼 여러 유형의 증여계약을 의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기증여, 부담부증여 그리고 사인증여 등이 있다.

정기증여(定期贈與)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일정한 재화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560조). 이러한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_euckr=%B1%E2%BA%CE 에서 확인 [2008.10.24]

與)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민법 제561조). 증여자가 부담의 한도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을 지는 증여이다(민법 제559조 제2항). 부담부증여에서 상호급부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담의 한도내에서 유상계약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손실을 입지 않는 한도내에서 부담을 진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가 생전처분으로써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2조).

(2) 유증

대가 없는 재산의 이전은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뿐만 아니라 한쪽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유증이 그 예이다(민법 제1074조).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상속권자가 아닌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을 이전하는 자의 생전의 증여(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게 된다. 상속권자는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을 받게 되지만, 유언을 통해 상속비율이 변경될 수는 있다. 유증과 상속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유증은 의사표시이고 상속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하나의 자연적 사실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유증은 수유자의 채무승계 여부에 따라 포괄유증, 특정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²⁾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비율을 주는 것으로 그 수유자는 채무도 승계하는데 반해,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지정된 적극재산인 특정재산만을 주는 것이므로 그 수유자는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또한 유증은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이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는 경우 각각 조건부유증과 부담부유증이라 한다.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부 유증(민법 제1073조), 수유자에게 유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유증을 부담부유증(민법 제1099조)라 한다.

2. 세법상 의미

세법에서는 “기부”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기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내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서 고액·상습채납자 등의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 규정하면서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기부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는 없지만, 어떠한 것이 기부금인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

2)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p.629 참조.

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재산적증여”, “증여” 등의 의미로 보았을 때 기부란 민법상 증여에 의한 이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위 공익법인 등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을 영위하는 자가 포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9호). 여기서 출연(出捐)이란 어떤 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라면 기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부는 민법상 유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세법상 기부는 민법상 증여, 유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민법과는 달리 기부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부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에 의한 기부의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세나 법인세가 문제되고, 유증의 경우에는 세법상 상속세나 법인세가 문제된다.

기부에 대해 사회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의 비과세 및 감면등 과세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국가가 하여야할 부분 또는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가 이외의 단체가 기부를 받아 그러한 영역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세제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세제상 혜택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의 추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제2절 | 기부의 현황

1. 기부에 대한 통계

(1) 기부규모 파악의 방법과 한계

기부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기부금의 규모는 기부와 관련된 과세상 혜택 즉 기부금 특별공제, 기부금 손금산입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각각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부금의 공제 및 손금산입의 한도적용과 과세상 혜택을 미신청한 경우에는 조세지출보고서의 자료가 정확한 기부금 현황을 보여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측면이 아니라 기부자측면에서 직접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조세지출보고서와 같은 한계를 갖고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개인정보의 차원에서 접근이 어렵다. 법인기부자의 경우도 법인세신고 자료를 통해 파악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기부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조세지출보고서와 같은 한계를 갖는다. 다만 상장법인이라면 재무제표를 통해 기부금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비상장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가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 기부금규모를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

기부자측면이 아닌 기부받는 자의 측면에서 기부금을 이론적으로는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기부받는 자가 기부받는 기부금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1998년 11월 설립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처럼 대표적인 기부금수령 단체가 받는 기부금 현황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비율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개인기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법인기부에 대해서도 전체 기부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범위내에서 살펴본다.³⁾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국세청 신고자료별로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를 비교한다.

(2)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액의 규모

개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까지 적용대상이 근로자이고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5%였으나, 2000년부터는 적용대상은 거주자로,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10%로 공제율이 확대되었다.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특별공제 금액이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할 때 약 150% 증가한 것은 조세지원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⁴⁾

2008년부터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가 확대되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고, 공제율도 10%에서 15%(종교법인에 대한 것은 10% 유지)로 확대되는 등 세금혜택의 증가됨에 따라 기부금 증

3) 법인기부까지 상세한 기부금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2, pp.28-36 참조.

4)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28.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부자 유형별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기부금 특별공제(개인)		기부금 손금산입(법인)		계	
	금액	증가비율	금액	증가비율	금액	증가비율
1998	1,163	3,663		4,826		
1999	1,164	0.09	1,891	-48.38	3,055	-36.70
2000	1,194	2.58	4,417	133.58	5,611	3.66
2001	2,986	150.08	4,270	-3.33	7,256	29.31
2002	4,022	34.70	3,551	-16.84	7,573	4.36
2003	4,702	16.91	4,083	14.98	8,785	16.00
2004	4,448	-5.40	4,530	10.95	8,978	2.19
2005	5,067	13.92	5,295	16.89	10,362	15.41
2006	5,045	-0.43	5,390	1.79	10,435	0.70
2007	6,054	20.00	6,670	23.74	12,724	21.93
2008*	8,309	37.24	7,735	15.96	16,044	26.09

*전망치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1999~2008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액의 규모

[표 2] 기부자 유형별 기부금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개인		법인*		총합	
	금액(구성비)	증가비율	금액(구성비)	증가비율	금액(구성비)	증가비율
2004	388(22.1)	1,367(77.9)	1,755(100)			
2005	359(16.7)	-7.48	1,787(83.3)	30.72	2,146(100)	22.27
2006	350(16.1)	-2.51	1,826(83.9)	2.18	2,176(100)	1.39
2007	419(15.7)	19.71	2,253(84.3)	23.38	2,673(100)	22.84

*사회·종교단체, 공공기관 포함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2004~2007

(4) 국세청 신고자료에 나타난 기부금액의 규모

[표 3] 2005년 기부공제 인원 및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단위 : 억원, %

개인여부	항목	기부공제 인원	공제대상 기부금	1(법)인당 공제대상 기부금
	개인	근로소득자	310만명	36,000억원
종합소득자		31만명	7,400억원	239만원
소계		341만명	43,400억원	127만원
	법인	3.3만개	27,900억원	8,485만원
	합계	-	71,300억원	-

자료 : 국세청 신고자료(2005년 귀속)

재인용 : 손원익, “기부금 현황과 관련 세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10.1, p.4

2.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오랫동안 Giving Index 설문조사를 해 온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를 자세히 다루고 다른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도 기부금에 대한 현행 세제 개선방안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하나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설문조사 결과⁵⁾

가. 조사방법 등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기부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2008년 Giving Index 설문조사는 유한킴벌리가 협찬하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기획, (주)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2008년 11월6일 <제2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포럼>에서 초안이 발표되었고 동년 12월3일 <제8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08>에서는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나. 조사결과

● 2007년 기부 금액

2007년도 순수 기부액 평균은 19.9만원(N=559)으로 나타남. 이를 국민 전체(N=1016)의 평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9만원임. 순수 기부액을 연도별로 살펴볼 때 2005년에 비해 9.6만원 증가하였고, 국민 1인당 기부액은 3.9만원 증가하였음. 경조사를 포함한 평균 기부액은 68.6만원(N=811), 현금/보시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부액의 평균은 93.4만원(N=849)임.

●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기부 방법

순수 기부자(N=559)들은 가장 많이 기부하고 있는 기부처의 기부 방법에 대해, '직접 전달'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ARS 전화' 22.2%, '지로납부' 16.3%, 'CMS 자동이체' 6.3%, '온라인' 3.6%, '급여공제' 1.3%, '쌀기부' 0.2%의 순이었고, 무응답은 7.5%였음.

● 2007년 정기적 기부 여부

순수 기부자(N=559)들은 정기적 기부 여부에 대해 '정기적'이라는 응답이 16.6%(매주: 0.5% + 매달: 12.2% + 매분기: 3.9%)인 반면,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은 80.4%로 나타남. 무응답은 3.0%였음. 연도별로 볼 때 2003년 이후 정기적 기부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정기적'이라는 응답은 남성

5) 2008년 이전에는 http://www.beautifulfund.org/foundation/main/content.jsp?c_no=014003005003 참조. 2008년의 경우에는 (주)리서치앤리서치, "기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2008.6.~7.", 2008 참조.

(20.4%), 블루칼라(23.4%), 인천/경기 거주자(22.7%), 월 개인소득 200만원이상(2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07년 순수 기부금액의 기부처별 비중

순수 기부금액의 기부처별 비중은 자선단체가 30.29%,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6.88%, 지인 22.96% 등 3개 기부처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구호 6.50%, 정치단체 3.13%, 부랑자 2.29%, 공공기관 2.10%, 교육기관 1.37%, 환경보호 0.67%, 의료기관 0.23%, 문화예술 0.20%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경조사비와 현금/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액 중에서 순수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였음.

- 2007년 기부의 내적 동기

순수 기부자(N=559)들은 기부의 내적 동기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응답이 26.8%,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라는 응답이 24.7%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정심' 20.8%, '개인적 행복감' 15.9%, '종교적 신념' 10.7%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0.2%, 없음/무응답은 0.9%였음.

2005년 대비, '동정심'은 13.9%p 낮아진 반면,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는 6.4%p 높아졌음.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응답은 블루칼라(36.9%), 서울(32.9%), 인천/경기(32.5%) 거주자 등에서 높았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라는 응답은 고졸(28.6%), 부산/울산/경남(40.3%) 거주자 등에서 높았음.

-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국민들의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문항 중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의 100점 환산 점수가 77.0점, '지원대상 및 분야'는 74.5점, '사회적 개선효과'는 72.2점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인지도' 65.7점, '활동내역 정보 지속 제공' 65.5점, '기부자에 대한 혜택' 57.4점의 순이었음.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은 2003, 2005년에도 가장 많이 고려된 요소였음. 사회적 인지도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75.8%(매우: 13.6% + 대체로: 62.2%)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24.1%(전혀: 2.6% + 그다지: 21.6%)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운영 및 재정 투명성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5.4%(매우: 37.6% + 대체로: 47.8%)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4.5%(전혀: 0.7% + 그다지: 13.8%)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사회적 개선효과와 '고려한다'는 응답이 81.5%(매우: 26.7% + 대체로: 54.8%)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8.4%(전혀: 1.2% + 그다지: 17.2%)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지원 대상 및 분야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5.7%(매우: 26.1% + 대체로: 59.6%)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4.0%(전혀: 0.3% + 그다지: 13.7%)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활동내역 정보 지속 제공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74.2%(매우: 15.6% + 대체로: 58.7%)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25.7%(전혀: 2.1% + 그다지: 23.6%)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기부자에 대한 혜택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62.2%(매우: 12.1% + 대체로: 50.1%)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37.7%(전혀: 7.1% + 그다지: 30.6%)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2) 한국부자학연구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문조사 결과⁶⁾

가. 조사방법

한국부자학연구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8년 9월 17일 AIG생명에 10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액 자산가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액 기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조사결과

응답자의 56.7%는 "한국 사회는 고액 기부를 이끌어 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우리 사회의 고액 기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9.7%에 그쳤다.

부자들이 고액을 기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기부 조직의 투명성'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직의 사명감'을 꼽아 기부단체의 문화와 투명성이 기부의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기부 방법으로는 종교단체에 기부한다(21.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스스로 찾음(19.8%),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매경이코노미의 설문조사 결과⁷⁾

가. 조사방법등

매경이코노미는 기부에 대한 일반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매경리서치(www.c-news.co.kr) 및 엠브레인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2008년 8월 25일부터 3일간이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235명, 조사 방법은 온라인조사 형식이었다.

기부현황 조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 의지에 중점을 뒀 기부범위를 좁혔다. 복권 구매나 종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기부활동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거나 약하다는 판단에서 기부범위에서 제외했다. 구세군 자선냄비처럼 일시적이고 적은 금액의 기부활동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치자금은 포함시켰다.

개인별 기부 순위는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인 3가지로 분류해 조사를 실시했다. 기업인은 자산규모가 큰 기업 순과 함께 매경이코노미 선정 100대 CEO를 참조했다. 연예인과 스포츠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기부가 노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나. 조사결과

● 기부경험

40대(71%)와 차장(95%)이 전체 평균(65%)을 웃돌았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대가 46.4%로 가장 높았다.

● 평균 기부금액

1회 평균 기부 금액도 40대가 6만8489원으로 전체 평균(3만815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직급별로는

6) 동아일보, "부자들 "기부강요 시달릴까봐 기부 꺼려", 2008.9.19자 참조.

7) 매경이코노미, "[기부인식 설문조사] 40대 차장 인심 가장 후하네", 2008.09.10자를 요약 재구성함.

차장이 4만2636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장(4만310원), 부장(2만5025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임원은 1회 평균 1만2362원을 기부해 사원(1만9188원)이나 대리(1만6570원)보다 낮았다.

- 정기적인 기부와 앞으로 기부 의사

기부 경험은 65%에 달했지만 정기적으로 기부한다는 비율은 28.5%에 그쳤다. 앞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도 41.3%에 불과했다. 부장은 응답자 모두가 향후 기부 의사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차장급은 응답자 전원이 기부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0.9%로 가장 높았다. 기부금 쓰임새를 믿지 못한다는 비율도 28.8%로 높게 나타났다. 기부해야 할 곳을 못 찾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1.2%로 나타났다.

- 재산 대비 기부비율

재산 대비 기부 비율은 5~15%가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직급은 과장들이다. 이들은 자기 재산의 20%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37.4%로 다른 직급에 비해 10~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이 32.4% 비율로 자기 재산 대비 20%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600만~700만원 소득자는 0%였고, 700만~800만원 소득자도 그 비율이 6.1%에 그쳤다.

- 1회 평균 기부금액

1만~5만원이 46.2%로 가장 높았다. 1회 평균 기부금액은 3만815원. 직급별로는 차장이 4만2636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6만8489원으로 전체 1위였다.

성별로는 남성(4만4536원)이 여성(1만6620원)보다 3배가량 높았다. 소득별로는 500만~600만원 소득자가 4만4619원으로 1위였고, 8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1회 평균 2만1485원 기부에 그쳤다. 한 번에 50만원 이상 큰돈을 기부하는 계층은 600만~700만원 사이 소득자들(42.3%)이 가장 많았다. 반면 700만원 이상 소득자는 1회 5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 소득 대비 기부비율

기부 금액 수준은 소득 대비 5% 미만이 84.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치도 5% 미만이 64.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부 목표치에서 소득 대비 5~10% 미만을 기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재 상황보다 20%포인트 정도 높았다.

- 기부대상

기부하는 대상은 국내 사회복지기관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빈곤국가 대외지원기관이 23.7%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개인적 후원(15.2%)이 차지했고 정치인 기부는 2.5%에 그쳤다.

- 기부목적

개인이 기부하는 목적은 심리적 만족감이 70% 이상으로 가장 강했다. 그러나 50대 이상은 자기만족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강해서'가 30.8%로 높게 나왔다. 이는 임원급 이상, 소득 800만원 이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부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준다'가 63.2% 응답률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심리적 만족감이 32.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공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에 그쳤다.

- 기부금 사용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우이웃 장학금이 16.1%로 2위를 차지했다. 빈곤국가 대외지원(4.4%)과 정치후원(0.6%) 비율은 낮았다.

(4) 바른교회아카데미 설문조사⁸⁾

가. 조사방법

개신교 연구단체인 바른교회아카데미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개신교인과 목회자(88명) 등 49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간 십일조 여부를 묻는 설문은 몇 차례 나왔지만 그 규모와 빈도, 가구당 현금액 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바른교회아카데미는 밝혔다.

나. 조사결과

- 십일조를 하는 사람의 비율과 방법

응답자의 52.1%가 정기적으로 십일조 명목으로 현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일조를 한다는 응답자 중 60.3%는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의 10%를 한다"고 답했고 24.4%는 "정기적으로 하되 수입의 10% 이상을 낸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거나(9.9%) 10% 이하를 한다(5.4%)고 답했다.

- 가구당 총현금액

응답 결과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평균 총현금액은 344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세 이상인 성인이 3명인 경우 가구당 연간 총현금액은 386만4천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십일조와 별도로 교회 건축을 위해 내는 '건축 현금'은 가구당 평균 50만2천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현금이유

응답자들은 현금하는 이유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49%) ▲감사의 표현(31%) ▲교인으로서 의무(7.4%) ▲선교와 봉사(6.1%) ▲교회 건물과 시설유지(3.1%) ▲현금하는 만큼 복을 받기 때문(3%) 등을 꼽았다.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5/2008101500750.html

- 현금동기

“진정한 신자는 십일조를 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일반 신자는 78.3%, 목회자는 95.5%가 각각 동의한다고 답했다.

- 현금의 사용용도

이와 함께 현금으로 충당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있느냐는 질문에는 32.7%가 “자세히 알고 있다”, 35.4%는 “대충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금의 우선적인 용처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사회봉사(26%) ▲예배 및 교육활동(21.1%) ▲국내 전도(10.9%) ▲해외 선교(8.2%) ▲교역자 사례비(7.2%)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한편 바른교회아카데미가 현금 규모를 추정코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연간 종교 단체 운영자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6년 개신교의 연간 운영 자금은 약 3조1천760억원으로 천주교(3천390억원)와 불교(4천610억원)에 비해 7-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기부에 대한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부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핸드폰/ARS, 지로 등을 통한 기부 등 기부방법이 다양해지고, 출연대상도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자산뿐 아니라 연예인 등에 의한 포스터 무상촬영이나 전문직 등의 재능을 기부하는 경우와 같이 종전에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세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기부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일시적인 기부를 하는 경우와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상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즉 한 번에 10억 원을 기부하는 경우와 매년 1억원씩 기부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공정하게 할 것인지 여부이다.

둘째,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에 대해 현실적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향이 있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교단체인 경우와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된 현금은 사회봉사와 구제(26%)를 제외한 대부분이 교회 자체 유지를 위한 비용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부금의 용처에 대해 재해 및 불우 이웃돕기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또는 사회봉사와 구제 등 표현상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장 높게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기부세제가 필요하다. 즉 종전의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분류에 따른 세제혜택이 아니라 기능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기부동기를 분석해보면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는 ‘사회적 도움을 주기 위해’ 또는 ‘심리적 만족감’ 등에 의한 것이 많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부자로 하여금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 이는 세법 이외의 제도 전반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겠다.

넷째, 기부조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또는 쓰임새를 못 믿겠다 등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투명성을 위한 회계자료의 공시 및 사용처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설문조사에서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기부하는 자, 기부받는 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또 당연하다 하겠다. 예컨대 기부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부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기부재산을 그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준비금의 산입을 인정함으로써 기부의 효과를 온전히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현행 법제도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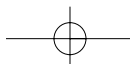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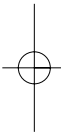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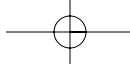
기부에 대한 현행 법제도

제1절 | 기부방법 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제도

제2절 | 기부금 세제의 재분류

제3절 | 기부조직의 투명성

제4절 | 기부자 및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제재



제3장 | 기부에 대한 현행 법제도

○● 제1절 | 기부방법 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제도

1. 기부금 교부 방식의 다양성

직접적인 현금교부 등에 의했던 종전과 달리 현재는 핸드폰이나 ARS, 수표, 신용카드나 지로에 의한 기부 등 중간에 다른 매체가 개입되어 기부방식이 다양해졌다.

예컨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자동이체 방식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부자의 통장에서 기부단체 통장으로 설정된 금액만큼(예, 1만원) 자동이체 되어 후원하는 방식인데, 기한을 설정해서 후원하거나 무기한으로 후원할 수도 있다. 또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이용요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기부금이 가산되어 청구된다. ARS를 통해 후원하는 방식도 전화요금에 기부금이 가산되어 청구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러한 경우도 직접 교부나 아니면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기부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아래와 같은 실무례는 이 점을 보여준다.

[실무사례 1] 카드사용금액 일정비율의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소득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3-10776, 2002.04.12.

【질 의】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을 고객의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회 신】

1.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상기 “1”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증명서에서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실무사례 2]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별로 물품대와 구분하여 별도 기부금을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1482, 2005.12.01

【질 의】

(사)○○○은 2005.3.31.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사)○○○에는 11만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서울생협 등 17개 지역조직원과 (주)○○○사업연합 등 6개 부문조직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으로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사)○○○에서는 전국 11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생명쌀지킴이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며, 이 모금을 통해 우리쌀(친환경유기농 쌀)을 구입해 북한동포와 어려운 이웃(결식아동) 등에 전달함으로써 농촌을 돕고 북한동포와 여러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회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하고자 함.

기금 모금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직접 기부약정서를 받고 회원이 직접 온라인 송금하는 경우와 ○○○이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기부금약정서를 받고 그 회원이 지역○○○생협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대금과 함께 내는(CMS,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 기부금을 지역생협에서 모아서 (사)○○○으로 기부자 명단과 함께 보냄.

이 경우 회원들이 지역○○○생협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대금과 함께 내는 기부금이 매출로 간주되고 지역○○○생협에서 기부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을 (사)○○○으로 재입금해줄 때 매출에서 대체(차감)되는 경우(현재 지역○○○생협의 회계처리시스템)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및 추가로 갖추어야 할 절차 등 여부

【회 신】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인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과 회원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역○○○생협에서 물품대와 구분하여 별도로 기부금을 회원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기부금을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다만 각각의 기부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기부에 대해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부금 공제 혜택의 부여 방식 및 그 귀속시기에 대한 것들이다.

먼저 기부금 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를 부정하였다. 현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인터넷증빙서류)’인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5호),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실무사례 3]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1030, 2004.07.27

【질 의】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전자문서를 ASP하는 회사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보안과 인증을 통한 문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음.

각종 기부금단체(또는 종교기관)에서는 연말이 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부금단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각 기부단체는 온라인(인터넷)상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부금단체에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프린트(출력)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용으로 온라인상의 문서를 출력해서 제출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법상으로 언제 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귀속시기가 주로 문제되는데, 각각의 경우 귀속시기에 대한 법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기본통칙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모두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현금주의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것은 민법상으로 증여(기부)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귀속시기를 현금주의로 판단하는 결과,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실무사례 4】 기부금 지출을 위해 발행한 선일자수표는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1669, 2006.08.30

【질 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위의 경우 법인이 “선일자수표”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기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선일자수표는 일반적으로 어음과 같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수표의 교부일이 아닌 선일자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을설〉 선일자수표로 교부한 기부금의 귀속시기도 수표의 교부일로 본다.

【회 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법정기부금 기타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 등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소법 통칙 34-3). 원칙에 따라 실제 지

출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면 공익법인 설립 인·허가전의 기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례도 이와 같다.

[실무사례 5]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1638, 2006.12.07

【질 의】

2006.7.9. 장학회를 발기하여 장학재단 설립목표까지 기금조성시 교육청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예정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 신】

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단체가 인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하여 같은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

1. 서면1팀-331(2005.3.2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설립 인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법인46012-2684(1994.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 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법인1264.21-2436(1982.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위의 방식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기부할 의사로써 전화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를 기부금의 귀속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이 그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귀속시기로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법 규정은 없으나 지출한 사람을 본위로 하여 전화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론으로라도 이에 관한 지침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이외에도 펀드 등을 통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의 금전 기부와 같은 효과를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져 이미 반영되었다.

(1) 공익기부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8,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7)

가. 개정취지

- 투자자가 직접 기부의 주체가 되는 펀드 설정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유도
- 공익사업 기부 목적의 펀드 수익을 비과세함으로써 기부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수인의 소액기부를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 기부금은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 (기부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 사업에 기부하는 부분을 비과세 • 일몰시한 : 2010.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공익기부투자신탁 등부터 적용

(2)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7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

가. 개정취지

-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재산을 기부할 의사는 있으나 사망 전에는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득으로 생계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기부수요 흡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 등에 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사회환원기부신탁) 설정을 특례 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 공제 허용 - 신탁수익 지급시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 - 과세특례 대상 신탁 •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탁의 범위 : 상증법 시행령 제14조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단체로 신탁기금이 귀속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금전신탁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세법에서는 기부금의 범위를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가액의 평가가 쉽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의 시장변동에 따른 가액 변동을 어떻게 적정하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세법에서는 도서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하는 유물이나 미술품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정기부금이지만 이를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손금산입 범위를 늘려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 세법상 자산성에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1)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국민신탁법인
 -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 일반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주무관청(문광부, 문화재청)의 엄격한 관리감독*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 *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예산안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재산현황의 공개, 회계연도 종료시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 공개
- 도서관·미술관에 기부하는 유물·미술품
 -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용 유물(박물관 자료)이나 미술품의 경우 고가로서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 내 손금산입 • 문화예술진흥기금 • 사립학교 운영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독립기념관 •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기부금 추가 •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 • “박물관” “미술관”*에 기부하는 전시용 유물 또는 미술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계산에 대한 특례

이외에도, 세법상 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출연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용역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 세법상 기부금 계산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때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보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7호).

- 사용 또는 수익기간 약정이 없을 때: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상각한다.
- 사용 또는 수익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계약 해지시: 당해 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날 이 속하는 연도에 기부자산가액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무례도 이와 같다.

[실무사례 6] 쟁점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은 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 하여야 함(국심98서508, 1999.06.17)

[실무사례 7] 기부채납 후 그 자산의 사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며, 계약내용으로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심사법인2002-207, 2003.09.29)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방법은 같다.

[실무사례 8] 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기부채납하고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법인46012-915, 1996.03.22

[질 의]

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으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여 기부법인으로 하여금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국가기부금으로 보는지.

[회 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시설물(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나.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 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업자가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소득세 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또한 사업자가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이것은 기부금 귀속시기의 판단 기준으로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기부금 등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 다. 다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장부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실무사례 9]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서이46012-10945, 2003.05.12

【질 의】

당사는 2002.9.28.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었는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사랑의 책 보내기 행사로 당 법인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기부받아 다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려고 함. 이 경우 출판사가 당 법인에 현물기부한 도서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실무사례 10] 업무와 무관하게 국가에 무상기증한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기부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1011, 2005.08.26

【질 의】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본인 소유 부동산(임야)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기부가액

【회 신】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임야)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라. 자원봉사 용역시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기부금의 경우 금전이외의 재산이외에 노무제공 자체는 기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사례 1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의 대가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와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면1팀-1443, 2004.10.26

【질 의】

안과병원의 원장이 “○○라디오 특별기획”(○○방송총국 편성제작국이 주관하여 ○○소방본부에 의뢰, 소방관의 근시안실태를 조사하고 라식수술 희망자를 접수, 근시안 수술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라식수술 주선)에 의해 “소방관 근시안 회복 무료수술해 주기” 지원운동에 참여하여 도지사가 통보해 오는 검진대상자(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무료로 라식수술을 해 주는 경우와, 상기 원장이 기관·단체장들과의 공·사석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불우이웃돕기의 심정으로 무료로 치료 또는 수술을 해 주는 경우, 당해 의료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료 또는 수술대가의 총수입금액계산 및 그 대가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 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의 대가는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 한 경우이다. 국가적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03.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위 용역의 가액이 기부금으로 계산된다.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에 5만원을 곱한 금액과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용·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81조 제5항). 봉사일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 한 경우에는 용역의 기부로 보지 않는다.

[실무사례 12]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성한 경우 동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216, 2008.02.18

【질 의】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을 하였을 경우「소득세법」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6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 또는 전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특별재난지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 현장 투입되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기부금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및 발급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2.1.)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2.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마. 성실중소사업자의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특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3 제3항).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지정기부금(소법§34 ①)
- ② 법정기부금(소법§34 ②)
- ③ 특례기부금(조특법§73 ①)
- ④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76)

(3)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평가액에 따라 공제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3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정기부금에 관하여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그런데 시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1) 주식의 경우

주식 특히 비상장주식을 기부 받은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상적인 거래 시례가 있으면 그에 의하면 되고, 이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례도 있다.

【실무사례 13】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기부당시 시가에 의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1702, 2005.10.21

【질 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산하 ○○광역시체육회에 프로축구단 ○○○○○ 주식을 기부하는 주식의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부당시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회 신】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실무사례 14]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937, 2006.01.12

【요 지】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이유】

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7개월 내지 9개월 전에 이루어진 조○준과 ○○홀트사 사이의 매매(1998.4.7.)와 조○준과 ○○하시 사이의 매매(같은해 6.5.)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코리아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이하 “FMK 주식”이라 한다)이 모두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6개월 뒤에 이루어진 ○○○미디어와 양○락 사이의 매매(1999.7.9.)에서 FMK 주식이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그와 같은 매매실례들을 포함하여 1998.4.7.부터 2000.7.6.까지 사이에 FMK 주식에 대한 총 15차례 이루어진 매매에서 1주당 가격이 대체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점, ○○회계법인이 1998.12.31. 현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FMK 주식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FMK 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는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1998.12.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18,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실무사례 15] 협회등록주식으로 제공된 기부금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제도46011-11126, 2001.05.15.

【질 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함.
사업자가 아닌 개인 A씨는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이른바 KOSDAQ 거래주식)을 B사립대학교의 건물신축자금으로 기부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시설비명목의 기부금은 거주자의 “전액 필요경비인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금가액의 계산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평가문제가 발생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이른바 “지정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기부금가액을 산정하고, 전액 필요경비인정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의 기부금평가에 대해서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의 경우에 본건에서와 같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전액 필요경비인정기부금으로 규정된 기부금용도로 기부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부금가액산정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협회등록법인 주식이기 때문에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부일기준 전·후 2월간의 증가평균액에 의한다.

〈을설〉 기부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 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거래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기중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정확한 순자산가액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장성 있는 주식을 기부 받은 경우에도 즉시 처분하여 처분가액을 기부금으로 하면 좋겠으나, 여러 사정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가가격의 등락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이 변동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

2)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시가 평가의 문제 외에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증여 등 이른바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의해 부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그 처리 및 채무변제 등의 행정비용 등에 문제가 있다.

또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받는다면 사용이나 처분 등과 관련한 관리 문제가 쉽지 않다.

가. 고유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무사례 16] 주택건설업자가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며,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는 있으나 기부 자체를 제한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1699, 2005.10.21

【질 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자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전국 합산 누진 중과세됨으로 회사가 보유할 가치가 없고 처분도 용이하지 않은 토지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경우 조세정책상 제한규정이나 이와 관련한 세법규정이 있는지.

【회 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을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금산입한도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나「법인세법」등에서 기부 자체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 것임.

[실무사례 17]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사건번호】 서면2팀-708, 2005.05.20

【질 의】

사단법인 한민족통일교육역사 연구소는 2004.12.1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해당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소득금액에서 각각 몇%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함)를 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범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내에서 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액에서 특별공제 하는 것임.

나. 기부받은 부동산의 관리

한편, 기부 받은 부동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할 점이 있다. 기부를 받더라도 아래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만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세무서장 등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상증법 48조).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법 48 ⑤).

다. 공익성의 판단

가) 공익목적사업의 범위

공익목적사업 등이란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단,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相贈通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a.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①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②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③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b. 출연재산이 제1항 외의 재산인 경우

- 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③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항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c. 출연 받은 재산(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을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을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용 여부

출연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므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나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예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등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相贈法 48 ② 1호 단서).

라)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 미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3. 기부금 제공 방식의 다양성

일시적인 기부를 하는 경우와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차이가 있는가. 예컨대 매년 1억씩 10억을 기부하는 경우와 일시에 10억을 기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사업자가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고 하므로, 매년 1억씩 기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일시에 10억을 기부하는 경우와 매년 1억씩 10년 기부하는 경우는 세법상 전혀 다르게 된다. 이자율을 5%로 가정하는 경우 매년 1억씩 10년을 기부하는 경우 현가계수는 0.61391이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13,910,000원을 기부하는 것과 동일하며, 7%이자율을 가정하는 경우의 현가계수는 0.50835로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508,350,000원을 기부한 것이 된다. 다만 법 감정상으로는 똑같이 10억을 기부하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략 6억원을 기부하면서 10억원을 기부하는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혜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필요경비산입방법으로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면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기부금공제방법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는 이러한 필요경비산입방법과 기부금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액에서 차감한다.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기부금공제는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⁹⁾

$$\text{기부금 공제액} = \text{Min(법정기부금, 한도액)} + \text{Min(특례기부금, 한도액)} + \text{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text{Min(지정기부금, 한도액)} - \text{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이 때, 법정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100%.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

$$\text{특례기부금 한도액} = (\text{기준소득금액} - \text{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times 50\%$$

$$\text{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text{기준소득금액} - \text{한도 내의 법정 및 특례기부금}) \times 30\%$$

$$\text{지정기부금 한도액} = (\text{기준소득금액} - \text{한도 내의 법정 및 특례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times 15\% (\text{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text{ 또는 } 10\% (\text{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text{Min}(\text{①}, \text{②})$$

이 때, ① = (기준소득금액 - 한도 내의 법정 및 특례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5%

② =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이와 같은 계산규정을 잘 보면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결국 기준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업소득자가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기부를 한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우선,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특례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기부금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법 34조 3항, 조특령 69조의2 2항).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사회환원기부신탁의 경우는 3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3년이다. 이월공제 및 공제방법과 관계된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 일반적인 세무회계 수험서 등에서 소개되는 계산공식이다. 예컨대 임상엽·정정은, 「세법개론」, 상경사, 2008.2, p.821.

[실무사례 18]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사건번호】 서일46011-10306, 2002.03.12.

【질 의】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1. 2001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1년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소득공제하고 남은 지정기부금(2001년도 지출 지정기부금은 한도액은 초과하지만 200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방법으로 해당 연도의 지정기부금한도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밖에 없음).
2. 2001년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2001년도의 당해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한도액만 소득공제방법으로 공제받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실액신고의 경우로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필요경비산입신고조정으로 당해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밖에 없음).

【회 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실무사례 19]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699, 2003.05.29

【질 의】

2001년도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2002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귀 질의와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 회신문(서일46011-10306, 2002.3.12.)을 참고하기 바람.

[실무사례 20] 사업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경우에는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어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114, 2006.01.27

【회 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실무사례 2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한도 초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828, 2007.06.15

【질 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본인은 2005.6. 본인 소유의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임야)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기부금을 본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바 약 3억8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함. 그러나「소득세법」제3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귀속종합소득세에서 약 2천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결과가 됨. 위의 경우에 나머지 금액(약 3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다음연도 이후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시에 10억을 기부하는 경우와 매년 1억씩 기부하는 경우 현가계수로 따지면 매년 1억씩 기부하는 경우는 약 6억원을 기부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데 법감정상 10억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또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하되, 이월공제는 최대 3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미미하여 일시에 기부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줄이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는 6억원을 기부하면서 10억원 기부와 유사한 법감정상 효과를 누리고 실제적으로 매년 지출한 연도에 대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기기부를 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된다.¹⁰⁾

10) 온라인 정기기부자와 관련하여 증액 행동을 분석한 논문으로, 강철희·양진옥, "비영리기관 온라인 기부 증액자의 기부 증액행동에 관한 연구-정기기부자의 증액빈도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1호, 2008.6에 있다. 이 논문은 국내 G 비영리기관의 온라인 정기기부 증액자 1,3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서베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회신해 온 160명의 기부자에 대해 분석을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3가지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인구사회적 변수 중 성별(남)과 결혼상태(미혼)가 증액빈도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의 기부에 대한 기대 및 기부경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기부자의 과거기부경험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정기기부 증액자 중 과거에도 다른 기관에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이들일수록 2회 이상으로까지의 증액을 수행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 관련 요인(신뢰도, 서비스 만족도, 충성도) 및 사이트 관련 요인(사이트 편리성)의 경우, 기관에 대해 갖는 충성도만이 정적인 방향에서 기부증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도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기부증액행동과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충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비영리기관 기부자와의 관계에서 핵심적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시적인 고액기부에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시적인 고액기부를 늘리려면 최소한 매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법은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그 기간을 10년으로 할지 아니면 15년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최대 15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¹¹⁾

○● 제2절 | 기부금 세제의 재분류

1.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의의와 종류 등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1호). 이러한 기부금은 접대비와는 무상적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2호).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불산입된다. 그러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공익성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액 또는 일정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지정 기부금).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11)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8년 12월 법인세법 개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법인세법 제13조, 제76조의 13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 단서 신설).

[표 4]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특별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1. 법정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소득세법 34②) (조특법 73①)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소법 34②1호)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소법 34②2호) ③ 천재·지변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소법 34②3호)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소법 34②3의2호)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소법 34②4호)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소법 34②5호) ⑦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소법 34②6호)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소법 34②7호) ⑨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소법 34②8호) ⑩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만원까지는 110분의100 세액공제)(조특법 76조) ⑪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조특법 73조①1호)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특법73①3호)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특법73①4호) ③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특법73조①8호~12호) ④ 결식아동 결식해소 사업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특법73조①14호) 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에 신탁한 금액(조특법73조①15호, 2007.12.31 신설) ⑥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특법73조①16호, 2007.12.31 신설) ⑦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조특법73조①17호, 2007.12.31 신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특법 88의4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4.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시행 령 80) (법인세법시행 령 36)	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각호의 기부금(소령80①1호) ◆ 1호 - 가 ~ 바 - 사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한 것에 한함) - 아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①) · 비영리법인 ·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1호-38호, 40호-64호) ◆ 2호 - 가 ~ 나 - 다 :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②) ◆ 3호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소령80① 2호)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소령80①3호)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소령80①4호)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민간대상단체에 지출한 기부금(5년간 지출한 것에 한함)(소령 80①5호) 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소령80①6호, 20008.2.22 신설)

2. 한도액 계산 방법

기부금 유형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이미 보았다. 이를 보기 좋게 다시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특별공제) 한도액(2008년 귀속)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있는 경우 (1)+(2)	(1)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10% (2) ①,② 중 적은 금액 ①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5%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15%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100분의 10을 유지한다.

3. 기부금 재분류

현행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그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분류기준은 기부받는 단체가 공익성이 강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 같다. 이러한 분류 역시 타당한 점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지만 사실증명이 쉽지 않거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서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실무사례 22]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812, 2007.06.14

【질 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 병역을 마치고 나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나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기에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본인(거주자)이 보조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374, 1995.5.19.)을 참고하기 바라며,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동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참고예규: 법인46013-1374(1995.5.19.)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호(중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것은 기부하는 사람이 주의할 점이다. 기부받는 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기부금의 분류가 행해지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이더라도 공익목적 사업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이러한 비용지출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 공급에 쓰인 것이므로 이러한 공공재 공급에 쓰인 직접 쓰인 비용에 기부하는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출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만 제약하지 말고, 예컨대 국세청의 활동테스트 등 일정한 기준을 넘는 비용지출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례 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손금산입비율을 좀 더 인정하는 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 제3절 | 기부조직의 투명성

기부조직의 투명성을 위한 현행 세법 규정은 2007년 말의 대폭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보완되었다. 그러므로 기부조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특히 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뿐 아니라 2010년부터는 소액이더라도 기부금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고 또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부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자칫 기부는 증가하지 않고 행정비용만 증가하여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할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이 있다. 제도운용상 추이를 보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 공익법인도 그 규모나 조직이 각각 다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부터 우선 실시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기부조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입법화된 제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 제17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2항 · 제226조

가. 개정취지

-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 · 제재 강화
 -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허위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
 - 경정사유에 추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경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 기부금공제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공제에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 200만원 이상 기부자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p>• 허위*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허위증거자료의 수취 등</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 최초로 해당사유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5년 보관 범위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 - ('07) 100만원 이상 기부자 - 관할세무서장 요청시 제출의무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보관의무 강화 - ('09) 50만원, ('10) 금액제한폐지 * ('08) 100만원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의 세무관서 제출 의무화 * 양식 표준화 : 건수, 금액, 사용내역 등 제출 *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 2009.1.1.)

3. 기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가. 개정취지

-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기재금액의 1%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보관액의 0.1%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2배 강화 • 영수증 기재금액*의 2%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미보관액의 0.2% ■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 명단공개이전에 해당 단체에 대해 사전 소명 기회 부여 - 공개여부 심의를 위해 국세청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둘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명단 공개는 2008.1.1.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 내용 이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좌 동)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해 회비·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을 것 <p>*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턴 소급하여 1년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결산보고서 공개에 동의할 것 ■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턴 3월이내에 행자부장관에게 제출 - 행자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총액·건수 및 사용내역 개요 공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수입명세서 등*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 수입내역, 통장관리 현황 및 수입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표시한 체크리스트형식의 서식(재경부령으로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 이후 지정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불성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시 <p><추 가></p> <p><추 가></p> <p><추 가></p> <p><추 가></p> <p><추 가></p> <p><신 설></p>	<p>■ 지정취소 사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을 통해 회비·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p>※ 지정취소 이전에 당해 단체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p> <p>■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 이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및 질문·조사 근거 마련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제170조

가. 개정취지

- 종합소득이 없는 기부금 수령단체 등에 대하여도 세원관리 목적상 고유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등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 대한 질문·조사권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고유번호 부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p><추 가></p>	

종 전	개 정
<p><추 가> ■ 질문 · 조사 - 소득세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시 다음 자에 대하여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요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지급조서제출의무자 •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자등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부터 적용

7.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 시행령 제43조의2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 계좌 개설을 의무화
- * '06.12월 소득세법 §160의5(사업용 계좌의 개설 · 사용의무 등) 신설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점을 감안 전용계좌 개설 · 사용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1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 · 지출의 범위 •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경우 • 기부금 · 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등 예외인정 • 인건비 ·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부금 · 장학금 · 연구비등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100만원 초과분에 한함)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운용수익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전입(현금 등 자금 이전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사용금액의 0.5% -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 별도 명세서 작성 · 보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 기존 공익법인은 2008.6.31까지 전용계좌 신고
 - 다만, 가산세 부과는 20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8.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시행령 제43조의3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공시제도(자동제어장치) 도입
 - 국민이 실시간으로 공익법인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Portal Site 설치·운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 학교법인(사립학교법시행령 §14⑤)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p> <p>*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9)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p> <p>〈신 설〉</p>	<p>■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공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 대표자·이사·출연자등 기본사항 • 주식보유 현황 등 * 표준양식 제정 - 공시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종료후 4개월 내 공시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 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 자산총액의 0.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취지

- 대규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주기를 단축하되, 공익법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 수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 중 다음법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는 공익법인 (예 : 종교법인) •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 -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세무확인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의 준수 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확인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확인 대상 확대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세무확인 주기 단축 : 매 2년 → 매 1년 - 외부전문가 축소(3인→2인) *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 ■ 외부감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종교 · 학교법인 제외) - 주기 : 매년 - 미이행시 : 가산세 없음 * 개정된 주식출연 · 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 · 취득제한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용을 전제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 취득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5% * 5% 초과 출연 및 취득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주식출연 · 취득 제한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 ※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결산서등 공시 이행 • 외부감사 도입 •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주식 출연·취득 분부터 적용
- * 기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개정규정 적용

11.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취득 제한 완화에 맞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를 함께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있는 계열법인 주식 보유한도 - 일반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30% <신 설> - 성실공익법인* 및 국가 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소득의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 •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법인 주식 보유 제한 완화 - (좌 동) - 투명성(전용계좌, 공시, 외부감사)을 갖춘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의 30% → 50%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요건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기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개정규정 적용

○● 제4절 | 기부자 및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제재

기부를 하고 기부를 받는 것이 국가가 할 영역이거나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과세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개인기부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기부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 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래 세제상 혜택을 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세부담의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지 계속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제상 혜택을 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상 혜택에 대한 제한은 결국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상 대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부자와 기부받는 단체 모두 조세회피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기부자로부터 기부받은 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기부자와 기부받는 단체의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부관련 세법개정시 기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세제혜택을 늘려주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의식하여 세제혜택의 감소나 납세협력의무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의 폭을 늘려주면서 여러 요건을 강화시키는 경우 결국은 운영에 따라서는 기부관련 세제의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의 목적에 맞게 기부하고 기부를 받아 이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다 많은 세제상 혜택과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데 절차를 간소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제의 혜택도 줄고 기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절차상 의무를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세법개정에서 기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를 있었는지를 위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현행 세법규정에 대한 소개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기부관련 세법 개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1. 기부단체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와 면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이처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세법상 공익법인이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2007.2.28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에 대해서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10호).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그러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총발행주식수의 5%(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과세된다.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기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2) 납세협력의무의 부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과세상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여러가지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7%로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

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9항).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의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상증법 제78조 제5항).

공익법인(자산총액 100억 미만 공익법인과 종교, 학교법인은 제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상증법 제50조 제3항). 이 조항은 2007.12.31일 신설되어 20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7.12.31일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5%→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50%) 규정 등 개정법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은 제외한다(상증법 제50의2).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의무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의무위반시 가산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은 제외한다(상증법 제50의3).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되고 이는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기부금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160조의3).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2008.1.1. 이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2008.1.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부여된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3)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회피 가능성과 이에 대한 추정 및 가산세 부과

가. 증여세 추정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48 조 제2항 1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령 제40조 제1항 2호의2).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되었다(상증법 제48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다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고(2001.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제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 2호, 동법시행령 제37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4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9조).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 5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2호).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48 제2항 5호, 상증령 제38 제8항 1호).

나.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00.12.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미달사용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 4호, 4호의 2,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7항).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기업 주식 5% 또는 10% 이상의 보유 금지의무(상증법 제49조)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예외적인 경우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된다(상증법 제48조 제9항).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상증법 제48조 제8항). 또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상증법 제48조 제10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2. 기부자

(1)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제5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자 및 기부받는 자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

- 직계비속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맞벌이부부간의 이중공제 차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제17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2항·제226조

가. 개정취지

-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허위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
 - 경정사유에 추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경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 기부금공제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공제에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 ('07) 200만원 이상 기부자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 최초로 해당사유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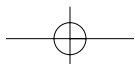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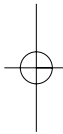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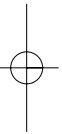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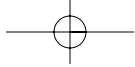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기부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제1절 | 기부 관련 주요국의 세제혜택의 비교

제2절 | 기부방법의 다양화

제3절 | 기부금의 재분류 등

제4절 | 기부조직의 투명성



제4장 | 기부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기부에 대해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둘러싼 세제혜택이나 법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최근 8개국의 기부 관련 세제를 비교한 문헌¹²⁾을 바탕으로 표로써 그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¹³⁾ 이 보고서의 목적이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행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국입법례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절 이하에서는 현행법 개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쟁점별로 미국, 영국 등 해당 국가의 제도를 취사 선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제1절 | 기부 관련 주요국의 세제혜택의 비교

1.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표

먼저 영미법계의 4개국(미국 내 아리조나 주,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과 대륙법계의 4개국(프랑스, 브라질, 헝가리, 포르투갈)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을 기본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표로써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6] 미국(Arizona주)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개인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소득금액의 50%까지)	\$200달러까지 기부금액의 100% 세금환급	Arizona 주의 TAN지원대상의 저소득가구	숙소 및 음식 제공을 비롯한 복지지원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데 50% 이상 지출하는 단체	기준기부금 이상을 기부한 경우	-
		\$200달러까지 기부금액의 100% 세금환급	-	방과후 활동지원	공립학교	현금 기부	-
		\$500달러까지 기부금액의 100% 세금환급	-	장학금	사립학교의 수업료 지원단체	현금 기부	-
기업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소득금액의 10%까지)	-	-	-	-	-	-

12) Calum M. Carmichael, "Doing Good Better?—The Differential Subsidiza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제8회 ISTR(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국제회의 발표자료집, 2008.7에서 다루고 있는 8개국의 기부관련 내용과 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 정리한다.

13) 미국, 일본의 경우 기부금공제에 대해 전체 인적공제의 하나로 소개한 문헌으로는,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2008.2, pp.82~91이 있다.

[표 7] 캐나다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기부시점
개인	기부금액의 15%~29% 세금환급 (소득금액의 75%까지)	\$1275달러까지 기부금액의 33.3%~75% 세액공제	-	-	등록된 정당 정치단체	-	-
		기부금액의 100% 세액공제	-	-	-	문화재 기부 또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대지를 기부한 경우	-
		기부금액의 100%에 상당한 정부보조금(matching grant)을 단체에 제공	동남아시아	재해복구 지원	27개 지정봉사단체	현금 기부	2006/12/04 부터 2011/01/05 까지
기업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매출액의 75%까지)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	-	-	문화재 기부 또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대지를 기부한 경우	-
		기부금액의 100%에 상당한 정부보조금(matching grant)을 단체에 제공	동남아시아	재해복구 지원	27개 지정봉사단체	현금 기부	2006/12/04 부터 2011/01/05 까지

[표 8] 인도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 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기부 시점
개인	기부금액의 50% 소득공제 (소득금액의 20% 까지)	세액의 10%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	-	정부의 기금운영기관, 정당	-	-
			-	정부가 인정하는 과학 및 사회 과학 연구활동, 환경보호활동, 도시개발활동	-	-	-
기업	기부금액의 50% 소득공제 (매출액의 20% 까지)	세액의 10%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	-	정부의 기금운영기관, 정당	-	-
			-	정부가 인정하는 도시개발활동, 환경보호활동	-	운영비 기부	-
		-	정부가 인정하는 과학 및 사회 과학 연구활동	-	운영비 기부	-	

[표 9] 싱가포르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 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기부 시점
개인	부금액의 200% 세액공제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액의 100%-300%에 상당하는 정부보조금 (matching)을 기부 단체에 지원	-	-	대학 (Universities)	-	-

[표 10] 프랑스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 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기부시점
개인	기부금액의 66% 세액공제(소득금액의 20%까지)	479프랑까지 기부금액의 75% 세액공제	저소득계층	음식 및 주택제공	-	-	-
기업	기부금액의 60% 세액공제(매출액의 0.5%까지)	-	-	-	-	-	-

[표 11] 브라질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기부시점
개인	기부금액의 15~29% 세금환급 (소득금액의 75%까지)	소득액의 6%까지 기부금액의 60% 세금환급	-	문화활동	문화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문화단체	행사지원 (Sponsorship)	-
		소득액의 6%까지 기부금액의 80% 세금환급	-	문화활동	문화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문화단체	행사지원 (Sponsorship)	-
		소득액의 6%까지 기부금액의 100% 세금환급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보호활동	아동보호단체	일반기부	-
기업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매출액의 2%까지)	소득액의 4%까지 기부금액의 30% 세금환급	-	문화활동	문화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문화단체	행사지원 (Sponsorship)	-
		소득액의 4%까지 기부금액의 40% 세금환급	-	문화활동	문화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문화단체	행사지원 (Sponsorship)	-
		소득액의 4%까지 기부금액의 100% 세금환급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보호활동	아동보호단체	일반기부	-
			-	미술관 및 박물관 등 공연예술	문화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문화단체	행사지원 (Sponsorship)	-

[표 12] 헝가리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기부시점
연간소득이 HUF 6.5million 이상인 개인	-	-	-	-	-	-	-	
연간소득이 HUF 6.5million 미만인 개인	기부금액의 30% 세금환급 (HUF 50,000 -150,000까지)	기부금액의 35% 소득공제	-	-	① 교회 ② 의료봉사단체를 비롯한 26종류 비영리단체 ③ 정부에서 운영하는 5종류의 단체	4년간 계속적인 정기기부	-	
기업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매출액의 20%까지)	기부금액의 120% 소득공제	-	-	① 교회 ② 의료봉사단체를 비롯한 26종류 비영리단체	4년간 계속적인 정기기부	-	
		기부금액의 150% 소득공제	-	-	정부에서 운영하는 5종류의 단체	-	-	
		기부금액의 170% 소득공제	-	-	정부에서 운영하는 5종류의 단체	4년간 계속적인 정기기부	-	

[표 13] 포르투갈의 기부 관련 세제혜택

기부자	기본적 세제혜택	부가적 세제혜택						
		구분	구분	지원단체의 활동		기부 조건		
				지원대상	활동	기부대상단체	기부종류	기부시점
개인	기부금액의 25% 세금환급(소득금액의 15%까지)	세액의 15%한도에서 기부금액의 32.5% 세금환급	-	-	교회 및 종교기관	-	-	
기업	기부금액의 120% 세액공제 (매출액의 0.6%까지)	매출액의 0.6%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30% 세액공제	-	-	-	수년간의 계속적인 기부	-	
		매출액의 0.8%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30% 세액공제	-	정부가 인정하는 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활동	-	-	-	
		매출액의 0.6%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40% 세액공제	-	미취학 아동지원	-	-	-	
		매출액의 0.6%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40% 세액공제	-	-	공공 예술 기관	-	-	
		매출액의 0.8%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40% 세액공제	-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특정계층지원	-	-	-	
		매출액의 0.6%한도에서 기부금액의 150% 세액공제	빈곤 여성	출산전후 지원	-	-	수년간의 계속적인 기부	-

2. 세제혜택의 국가별 비교검토

(1) 세제혜택 방식과 기부단체의 제한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의 경우는 개인 기부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는데 반해, 다른 국가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 기부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인도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부가적인 세제혜택은 기본적인 세제혜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된다. 이에 반해 미국 아리조나,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된다. 즉 소득공제 대신, 혹은 소득공제와 함께, 세금 환급 혹은 단체에게 기부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이 그 예이다.

기부금액의 액수에 따라 구간이 달라져 세제혜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부에는 한 개의 그룹만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아리조나와 프랑스는 기업 기부에 대해 그룹 구분이 없지만, 브라질, 헝가리 그리고 포르투갈은 각각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기부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부단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인도나 싱가포르,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개인이 종교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브라질, 헝가리, 포르투갈,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세제혜택,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에서는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위한 기부단체의 지원대상과 활동

지원대상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 아리조나의 경우 복지금을 받는 사람들은 수익이 연방 빈곤선의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들을 뜻한다. 포르투갈은 수입보다는 다른 특성, 즉 아동, 노인, 중독자, AIDS 감염자, 소수민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나눈다. 프랑스의 경우는 무료 급식과 주거를, 브라질은 아동을 위한 인권 보호를, 포르투갈은 출산 전후의 여성을 지원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을 별도로 정하기 보다는 해당 영역의 활동방식이나 단체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캐나다의 동남아의 피해자라는 조항은 2004년 쓰나미 피해자들을 나타낸다. 미국 아리조나에서, 공립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과 사립학교에서의 장학의 경우 초, 중학생들을 의미한다. 인도의 경우 제3학생들은 대학생들의 지원을 뜻한다.

어떤 경우 활동방식만으로도 시민활동의 범주가 판단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일반적이다. 브라질의 문화활동 촉진, 인도의 과학 및 사회과학 지원, 혹은 포르투갈의 인권과 시민권 개발 및 정보기술 지원이 그것이다.

(3) 기부조건

부가적인 세제혜택은 기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동남아에서 일어난 쓰나미에 대한 기부가 20일 이내에 이루어졌을 때에만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1991년부터 싱가포르는 국립대학을

위한 기부에는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가 2000년도에 설립된 후 3년 간 이 대학에 대한 기부는 다른 두 대학에 비해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부가적인 세제혜택은 무엇을 기부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 '무엇'이 금액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미국 아리조나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기부에만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지급한다. 헝가리나 포르투갈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계약상의 기부를 하는 기업에게 한 해만 기부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다른 경우, '무엇'이 기부되었는지는 '형식'이 중요할 수도 있다. 형식은 기부자에게 이득이 되는 목적의 유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브라질에서는, 기부가 스폰서십 형식일 때 더 적은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또는, 형식은 기부되는 재산의 타입을 포함할 수도 있다. 미국 아리조나에서는 오직 현금 기부만이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해 현금을 기부했을 때만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특정 자산에 대한 기부에 대해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은 공동을 위해 기부되었을 때 이득이 되는 자산(예컨대 문화재나 환경적으로 중요한 대지), 지속적인 부를 창출한다고 생각되는 자산(예컨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을 말한다.

○● 제2절 | 기부방법의 다양화

1. 기부금 교부방식의 다양성

(1) 미국

미국의 경우에도 현금 이외에 수표나 카드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기부가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그 귀속시기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¹⁴⁾

현금 기부의 경우 현금이 기부받은 단체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 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표를 통한 기부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 즉 수표가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 된다.

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의무발생시점 즉 기부자가 카드로 기부금액을 결제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다. 전화를 통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에 지불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다. 주식이나 채권 그밖의 증권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배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증권이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된 시점이 공제시점이다.

14)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p.54-55.

(2) 영국¹⁵⁾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postal order, standing order 등이 가능하며, “telegraphic transfer”로도 가능하다. 외환도 가능하며, 자선단체가 claim을 청구하는 경우 외환이 기부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기부금액이 모인 기부방식은 신용카드와 개인수표 지불방식이다.¹⁶⁾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미국의 경우 서비스(노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수반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가 인정된다. 자원봉사 활동에 수반하여 지출하는 여비나 교통비, 숙박비(\$170(h)(i)항), 자원봉사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복, 작업복 등의 비용(재무성규칙 1-170(g)) 등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제된다.¹⁷⁾ 이 경우에도 그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 예컨대 운전 중 사용한 주유비(1마일당 14센트), 주차비 등은 별도로 지출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수리비나 감가상각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자에게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¹⁸⁾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할 경우 공제금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이지만, 공제액은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서 자산을 판매하였다면 장기양도차익이 아닌 차익액만큼 감소된다.¹⁹⁾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형의 동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원가로 산정하며, 가치가 하락한 자산 혹은 가치가 상승한 단기보유자산의 경우에는 시장가치와 자산의 원가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으로 산정한다.²⁰⁾

영국의 경우 기부는 실제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채권포기나 보증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기부가 될 수 없다. 서비스나 권리, 기타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은 기부가 될 수 없고, 기부세제 혜택도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인에 대한 학비에 대한 지불 등도 Gift Aid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²¹⁾ 2000년부터 지분이나 증권 그밖의 투자자산 등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인정하고 있다.²²⁾

3. 기부금 제공방식의 다양성

영국의 경우 Payroll Giving을 인정하며, 이는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제도이다. 고용주가 Payroll Giving Scheme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조세감면을 받는다. 조세감면을 기부자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고용주는 이 금액을 급여에서

15)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62.

16)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42.

17) 岩田陽子, “アメリカのNPO税制”, レファレンス, 2004.9, p.40.

18)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54의 사례 참조.

19) IRC 제170조(e)(1)(A)

20)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55.

21)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62.

22)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64.

차감하여 국세청이 승인한 Payroll Giving Agency에 보내고 Agency는 모아진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한다.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repayment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²³⁾

○● 제3절 | 기부금의 재분류 등

1. 세금우대의 자격 취득 절차

(1) 비영리성과 세제 혜택의 분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 무조건 세제혜택을 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성과 세제 혜택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각 주(州)의 법적 개념이며 비영리법인이 되면 각 주에서 sales tax나 재산세,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연방면세단체들이 각 주의 법률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연방세법상 당연히 면세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소득세법상 면세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²⁴⁾

면세단체는 단체의 차원에서 소득세가 면세된다는 것이므로 기부금 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면세단체 중 별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부금 공제가 허용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 모든 면세단체(All Tax- Exempt Organizations) > 면세 가능한 기부금 대상 단체(Organizations eligible to receive deductible gift) > 면세자선단체(Tax-Exempt charitable Organization)의 순으로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미국세법 제170조 (c)(2)에서 정의하는 면세자선단체란 법인, 지역금고, 기금, 또는 재단으로서 전적으로 중

23) 손원익·박태규, 위 보고서, p.63.

2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non-profit and tax-exempt status? Non-profit status is a state law concept. Non-profit status may make an organization eligible for certain benefits, such as state sales, property, and income tax exemptions. Although most federal tax-exempt organizations are non-profit organizations, organizing as a non-profit organization at the state level does not automatically grant the organization exemption from federal income tax. To qualify as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es, an organization must meet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Internal Revenue Code.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id=136195,00.html>)

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점검, 문학,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과 국내의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관련 기관(경기장 또는 장비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 및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등으로, 순이익이 주주나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요활동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로비활동이어서도 안되고, 공직의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²⁵⁾ 이러한 면세자선 단체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종교에서 기부받는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기부받은 분야별 기부금액은 종교 968억달러(32.8%), 교육 410억달러(13.9%), Human service 296억달러(10.0%), 보건 202억달러(6.9%), 공공사회복지 214억달러(7.3%) 등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가장 높다.²⁶⁾

(2) 면세단체의 자격 취득 요건

교회나 아주 작은 규모의 단체를 제외하고 면세를 받으려면 IRS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501(a)는, subsection (c) 또는 (d) 또는 §401 (a)에 규정하는 단체는 §502조 내지 §503조에 의하여 면세가 부정되지 않는 한 이 절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²⁷⁾ §501(c)항에서는 이러한 면세단체 분류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501(c)(3)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에는 Public Charities라는 공익자선단체와 Private Foundation이라는 사적 재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509(a)의 조건을 만족하는 Public Charities가 보다 넓고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략 90%가 이에 속한다.²⁸⁾ 어쨌든 §501(c)(3)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출연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는 세제혜택을 받는데, 목적을 아래와 같이 하는 법인, 공동 모금, 기금, 재단을 의미한다.²⁹⁾

- 종교, 자선, 과학, 공공 안전의 검사, 문학, 교육, 또는 국내, 국제적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스포츠 시설, 도구의 지급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의 촉진, 아동, 및 동물의 학대 방지.
- 출자자, 개인에게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다.
- 선전 활동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직접 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거나 개인하는 것을 포함하며, 공직의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캠페인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25) IRC §170(c)(2) A corporation, trust, or community chest, fund, or foundation –

(B)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purposes, or to fost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but only if no part of its activities involve the provision of athletic facilities or equipment), or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C) no part of the net earnings of which inures to the benefit of any private shareholder or individual; and (D) which is not disqualified for tax exemption under section 501 (c)(3) by reason of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and which does not participate in, or intervene in (including the publishing or distributing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or in opposition to)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26) 손원익 · 박태규, 위 보고서, p.38.

27) IRC §501(a) Exemption from taxation : An organiz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c) or (d) or section 401 (a) shall be exempt from taxation under this subtitle unless such exemption is denied under section 502 or 503.

28) 岩田陽子, 위의 논문, 2004.9, p.32.

29) To be tax-exempt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①an organization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exempt purposes set forth in section 501(c)(3), and ②none of its earnings may inure to any private shareholder or individual. In addition, ③it may not be an action organization, i.e., it may not attempt to influence legislation as a substantial part of its activities and it may not participate in any campaign activity for or against political candidates. Organizations described in section 501(c)(3) are commonly referred to as charitable organizations. Organizations described in section 501(c)(3), other than testing for public safety organizations, are eligible to receive tax-deductible contributions in accordance with Code section 170.

통계에 나타난 §501(c)(3)의 면세단체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4] 미국 연방세법 501(c)(3)조의 유형별 단체 현황

조문	면세단체유형	단체수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271,742	1,312,647	1,354,395	1,399,558	1,444,905
501(c)(1)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	18	20	48	88
501(c)(2)	재산소유권 보유 회사	7,125	7,042	7,009	6,984	6,998
501(c)(3)	교회,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733,790	773,934	819,008	865,096	909,574
501(c)(4)	사회복지단체	139,533	138,927	137,037	136,882	137,526
501(c)(5)	노동, 농업조합	64,804	63,716	63,456	62,944	62,246
501(c)(6)	기업협회	79,864	81,493	82,246	82,706	83,712
501(c)(7)	사교 및 오락클럽	66,691	67,044	67,246	67,289	68,175
501(c)(8)	친목단체	84,507	84,519	81,980	81,112	80,193
501(c)(9)	자원고용인단체	14,240	13,886	13,595	13,292	13,173
501(c)(10)	국내친목단체	21,962	22,802	23,487	23,531	23,096
501(c)(11)	퇴직교사를 위한 기금	13	14	15	15	15
501(c)(12)	구제생명보험협회	6,423	6,462	6,489	6,500	6,553
501(c)(13)	공동묘지사업체	9,792	9,963	10,132	10,269	10,424
501(c)(14)	신용협동조합	4,378	4,408	4,320	4,409	4,471
501(c)(15)	상호보험회사	1,251	1,296	1,342	1,423	1,608
501(c)(16)	곡물경작 지원단체	25	23	22	23	24
501(c)(17)	보조실업수당 신탁	533	518	501	490	477
501(c)(18)	고용인 연금신탁	1	2	2	1	1
501(c)(19)	전쟁참전자 단체	35,682	35,428	35,249	35,263	35,227
501(c)(20)	법류서비스 단체	56	-	-	-	-
501(c)(21)	탄진폐증 신탁	28	28	28	28	28
501(c)(22)	중복취업자 연금	-	-	-	-	-
501(c)(23)	1880년 이전 설립된 지역군인협회	2	2	2	2	2
501(c)(24)	ERISA 제4049조에 기술된 신탁	1	1	1	1	1
501(c)(25)	연금등을 위한 지주회사	1,017	1,107	1,192	1,236	1,274
501(c)(26)	주후원 건강보험등	7	9	9	9	9
901(c)(27)	주후원 고용보험등	3	5	7	5	10

한편 미연방세법 §509(a)에서는 다음의 4종류의 공익자선단체(Public Charities)가 아닌 경우를, 출연자의 범위가 특정인에게 제한되어 있는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⁰⁾

- i) 509(a)(1) 연방세법 제170조(b)에 규정된 내국 혹은 외국단체(자선기부금공제를 최고금액인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체)(Public Supprt Organizations). 그런데 종교단체나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병원 등 의료연구기관, 공립대학 후원재단, 정부기관은 조건 없이 Public Charities가 된다.
- ii) 509(a)(2) 회원과 일반인으로부터 매년도 지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받으며, 매년도 지원금의 3분의 1 이하를 투자소득과 고유목적 무관사업소득으로 받는 단체(Qualifying as Publicly Supported Organizations). 수입의 실질적 부분이 정부기관 또는 일반대중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관으로서 역사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 적십자 등이 이에 속한다.
- iii) 509(a)(3) 상기 2 종류의 단체와 운영면에서 관련이 있어, 이러한 단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Supporting organizations)
- iv) 509(a)(4) 공공안전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Public safety testing organizations)

(3) 면세자격 취득 절차

일반적으로는, 우선 소정의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내국세입청에 신청한다. 다음에 그 신청 내용이 미국

30) IRC § 509. Private foundation defined

(a) General rule

For purposes of this title, the term "private foundation" means a domestic or foreign organization described in section 501(c)(3) other than—

(1) an organization described in section 170(b)(1)(A) (other than in clauses (vii) and (viii));

(2) an organization which—

(A) normally receives more than one-third of its support in each taxable year from any combination of—

(i) gifts, grants, contributions, or membership fees, and

(ii) gross receipts from admissions, sales of merchandise, performance of services, or furnishing of facilities, in an activity which is not an unrelated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13), not including such receipts from any person, or from any bureau or similar agency of a governmental unit (as described in section 170(c)(1)), in any taxable year to the extent such receipts exceed the greater of \$5,000 or 1 percent of the organization's support in such taxable year, from persons other than disqualified persons (as defined in section 4946)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 from governmental units described in section 170(c)(1), or from organizations described in section 170(b)(1)(A) (other than in clauses (vii) and (viii)), and (B) normally receives not more than one-third of its support in each taxable year from the sum of—

(i) gross investment income (as defined in subsection (e)) and

(ii) the excess (if any) of the amount of the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 (as defined in section 512) over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by section 511;

(3) an organization which—

(A) is organized, and at all times thereafter is operated, exclusively for the benefit of, to perform the functions of, or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one or more specified organizations described in paragraph (1) or (2),

(B) is—

(i) operated, supervised, or controlled by one or more organizations described in paragraph (1) or (2),

(ii) supervised or controlled in connection with one or more such organizations, or

(iii) operated in connection with one or more such organizations, and

(C) is not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disqualified persons (as defined in section 4946) other than foundation managers and other than one or more organizations described in paragraph (1) or (2); and

(4) an organization which is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testing for public safety.

For purposes of paragraph (3), an organiz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include an organization described in section 501(c)(4), (5), or (6) which would be described in paragraph (2) if it were an organization described in section 501(c)(3).

연방세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가 판정된다. 그러한 심사를 패스해 처음 민간 비영리 조직에 관련된 세제상의 우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신청서는 Employer Number (EIN)를 위한 것, 면세승인을 위한 것 등 2 개를 작성하여야 한다.³¹⁾ 세제상의 우대를 받게 되는 단체는, 이미 본 바와 같이 미연방 세법 §501(c)에 규정되고 있으며,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³²⁾ 또 연방세의 면세자격과 주세의 면세자격은 연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³³⁾

(4) 면세자격 유지

면세자격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설립 당시 면세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IRS의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조직테스트(Organization test)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상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관에 연방소득세법 §501(c)(3)의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기관을 운영한다는 점, 기관의 수입이 이사나 관리자, 수탁자 기타 개인에게 배분되지 않으며, 청산을 할 때에는 §501(c)(3)의 면세목적에 분배하거나 다른 면세기관에 분배하며,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란 기관의 운영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관의 사업활동은 면세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그 비용지출은 규모나 자금조달 등에 비추어 상응한 것인지, 자금조달에 있어서 투자소득이 아닌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익성테스트에 있어서 연간 수입의 33%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요한다.³⁴⁾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 면세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정기적인 조사가 행해진다. 면세자격 승인시의 심사에는 신청단체의 활동실적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의 정관 내지 규약에 기재된 목적, 잔여재산의 귀속, 재무상황 등 형식적인 면에서의 심사가 중요시되고, 정기심사시에는 재산이나 자금이 내부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가 중요시된다.³⁵⁾

31) How does an organization become tax-exempt?

To be recognized as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ation, most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apply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For section 501(c)(3) organizations, the law provides only limited exceptions to this requirement. Applying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results in formal IRS recognition of an organization's status, and may be preferable for that reason. The IRS will recognize an organization as tax-exempt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See Types of Tax-Exempt Organizations and Publication 557, Tax-Exempt Status for Your Organization, for more information. Organizations applying for tax-exempt status must submit two applications: First, if they have not previously received an Employer Number (EIN), they must apply for one, and second,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The IRS sometimes recognizes a group of organizations as tax-exempt if they are affiliated with a central organization. This avoids the need for each of the organizations to apply individually. See Publication 4573, Group Exemptions, for more information.

32) Does a government entity need to apply for exemption?

Most state and local government entities are not required to pay federal income tax. For non-tax reasons, though, government entities are sometimes asked to provide a tax-exempt number or determination letter to prove their status as a tax-exempt organizati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required to apply for this exempt status, however. As discussed in Affirmation of Your Tax-Exempt Status, the IRS will issue a letter describing the tax status of government entities. Mo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ill accept this letter as the substantiation that they need. No application is required, and no fee is associated with this

31) 岩田陽子, 위의 논문, p.36.

34)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2008」, 아름다운북, 2008.12, p.69.

35) 岩田陽子, 위의 논문, pp.36-37.

2. 공제범위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미연방세법 §170(b)(1)(A)에 규정된 단체, 예컨대 교회, 교회의 모임(convention)이나 협회(association), 정상적으로 정규학부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정규등록 학생이 있는 교육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정기적으로 미국정부 또는 주 정부 및 그 정치적 지역기관을 통해 받거나 일반인의 직간접 기부금을 받는 단체, 정부조직(state, political, subdivision, United State, district of columbia), 일정한 사적 재단 등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 후 총소득의 50%를 한도로, 민간재단을 포함한 기타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 후 총소득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다.³⁶⁾ 보존재산이라면 15년간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³⁷⁾

개인이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개산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선택하여야 하는데,³⁸⁾ 개산공제는 70% 정도의 납세자가 선택하며 항목별 공제는 고소득자가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³⁹⁾

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는 3,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전달된 자선단체의 명의를 신고하고 현금 이의 5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기부하면 공정가격 산정방식을 밝히고 5,000달러 이상이면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은 기부 받은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갖추어야 한다.

○● 제4절 | 기부조직의 투명성

미국의 경우 기부조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공익성테스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공익성 테스트 외에 다음 두 가지 정도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 기부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내국세입청에 보고할 의무는 있으나 개시(開示)의무는 없으므로 열람 등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6) IRC §170(b)(1)(B) Any charitable contribution other than a charitable contribution to which subparagraph (A) applies shall be allowed to the extent that the aggregate of such contributions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i) 30 percent of the taxpayer's contribution base for the taxable year, or (ii) the excess of 50 percent of the taxpayer's contribution base for the taxable year over the amou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llowable under subparagraph (A)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subparagraph (C)). If the aggregate of such contributions exceeds the limitation of the preceding sentence, such excess shall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ules of subsection (d)(1)) as a charitable contribution (to which subparagraph (A) does not apply) in each of the 5 succeeding taxable years in order of time.

37) IRC §170(b)(1)(E) (i) In general Any 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 (as defined in subsection (h)(1)) shall be allowed to the extent the aggregate of such contributions does not exceed the excess of 50 percent of the taxpayer's contribution base over the amount of all other charitable contributions allowable under this paragraph. (ii) Carryover If the aggregate amount of contributions described in clause (i) exceeds the limitation of clause (i), such excess shall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ules of subsection (d)(1)) as a charitable contribution to which clause (i) applies in each of the 15 succeeding years in order of time.

38)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의 세제개혁 때에는 5년간의 한시입법을 통해 개산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에게도 기부금공제를 인정했으며, 부시대통령도 2003년 다시 개산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도 기부금공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岩田陽子, 위의 논문, p.39).

39) 岩田陽子, 위의 논문, p.39.

또한 이사 및 최대액의 보수를 받는 상위 5인의 성명, 주소, 직명, 취업시간, 금액 등을 연간 보수가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⁴⁰⁾ 이런 점에서 고액기부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 전원의 이름과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두번째는 annual returns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⁴¹⁾ 일반적으로 면세단체는 반드시 연차보고서(an annual information return)를 등록해야 하지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25,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등록의무가 없으며, 990-N 형식에 따른 전자고지(an annual electronic notice (e-Postcard) Form 990-N)가 요구될 수는 있다. 이외에 교회와 특정 종교조직, 주 및 지방 조직 등은 이러한 등록의무가 없다.⁴²⁾ 이러한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일당 20달러(\$20 a day)의 벌금액이 과해지며,⁴³⁾ 연간 총영수액의 5% 또는 1만 달러 중 작은 액이 한도가 된다(the lesser of \$10,000 or 5 percent of the organization's gross receipts for the year).

신고는 MeF라 불리는 e-File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전자신고는 종이에 의한 신고에 비해 빠르고 쉬우며 더 정확하다는 장점을 가진다.⁴⁴⁾

40) 岩田陽子, 위의 논문, p.42에서는 일본과 비교하고 있다.

41) What reports and returns is an exempt organization required to file annually? Most exempt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file annual returns.

42) Generally, tax-exempt organizations must file an annual information return. Tax-exempt organizations that have annual gross receipts not normally in excess of \$25,000 are not required to file the annual information return, but may be required to file an annual electronic notice (e-Postcard) Form 990-N. In addition, churches and certain religious organizations, certain state and local instrumentalities, and other organizations are excepted from the annual return filing requirement. In addition, Publications 4221-PC and 4221-PF explain the filing and recordkeeping rules that apply to section 501(c)(3) tax-exempt public charities and private foundations respectively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id=96103,00.html>).

43) A tax-exempt organization that fails to file a required return is subject to a penalty of \$20 a day for each day the failure continues. The same penalty will apply if the organization fails to give correct and complete information or required information on its return. The maximum penalty for any one return is the lesser of \$10,000 or 5 percent of the organization's gross receipts for the year. If the organization has gross receipts in excess of \$1,000,000, the penalties are increased to \$100 per day with a maximum penalty of \$50,000.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id=96103,00.html>).

44) What is e-File for charities and nonprofits (tax-exempt organizations)?

IRS Modernized e-File (MeF) is the name for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for certain tax and information returns. When a nonprofit organization e-files, it sends its information return data to IRS electronically instead of on paper forms. MeF is a web-based system allowing electronic filing through the Internet. MeF uses the widely accepted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format, a standardized way of identifying, storing and transmitting data. MeF currently accepts filings through IRS' existing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EMS).

Exempt organizations can e-file: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Form 990-EZ, Short Form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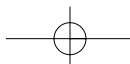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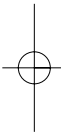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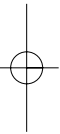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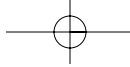
Form 990-PF, Return of Private Foundation or Section 4947(a)(1) Trust Treated as a Private Foundation;

Form 1120-POL,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Political Organizations;

Form 8868,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an Exempt Organization Return; and

Form 7004, Application for Automatic 6-Month Extension of Time To File Certain Business Income Tax, Information, and Other Returns (the extension form associated with the 1120-POL).

Certain tax-exempt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electronically file as explained in these FAQs. With a few exceptions, most tax-exempt organizations that file Forms 990, 990-EZ, 990-PF, or 1120-POL can file electronically. Form 990-T, Exempt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 is not yet available for electronic filing.



제5장

기부관련 법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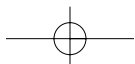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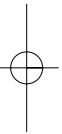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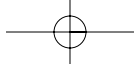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제1절 | 기부방법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2절 | 기부금 재분류

제3절 |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제4절 |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 구축

제5절 | 기부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개선방안



제5장 | 기부 관련 법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 제1절 | 기부방법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 평가

기부의 경우 일회성으로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만 기부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 기부를 내는 재산의 형태나 실제 기부가 이루어지는 시가, 기부에 따른 추가부담 요구 등 기부하는 자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기부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기부자의 기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제 및 법제도적인 장애나 애매한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개선을 하는 것은 제도 때문에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다양한 기부가 가능토록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제도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교부방식 측면

다양한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주의에 의해 해석하는 한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특히 문제될 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실무상 좀 더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정도의 기대가 있다. 오히려 기부받는 단체에서 다양한 기부방식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 보거나 기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 측면

기부금 출연대상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봉사 영역의 경우와 현물기부에 대한 것이다. 먼저 자원봉사 영역의 경우 우리는 자원봉사 영역 자체에 대해 기부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자원봉사 영역 제공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도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대비해 보면 문제가 있다. 어느 범위까지 기부금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남용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러한 태도는 기부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현물기부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법에 의해 규율되어 기부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받은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기부를 받는 단체의 행정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3) 기부금 제공방식의 다양성 측면

올라른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부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세법상 장기적인 기부를 하는 경우 오히려 고액의 재산기부를 막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세법의 이월공제가 3년의 단기간만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공제의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일정한 경우 1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입법론으로 보더라도 우리 세법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영국의 Payroll Giving system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기부금 제공방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개선방안

(1) 다양한 기부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전달기구와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기부방식도 점점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법과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모든 상황과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양한 기부방식에 대해서도 “기부”라는 개념이 갖는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본다면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현재 펀드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방안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은 기부받는 단체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미국의 자치단체 중에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상환하는 채권 즉 revenue bond를 발행하여 그 재원으로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수익이 잘 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채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의 상환기간 동안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채권이 발행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매수자에 대하여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문화센터의 의자에는 “○○의 기부로 마련한 것입니다”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1년에 1-2회 정도 기부자들을 전부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등 기부금의 용처와 무엇인가 대가를 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규모 펀드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

급받아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도 있다. revenue bond 사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그 운용·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기독교선교사업에 사용하는 크리스찬펀드를 구성했다고 한다.⁴⁵⁾ 공익법인도 이와 같은 방식의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기부자의 기부동기에 따른 사용을 하거나 기부금의 용처에 따른 설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부받는 단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현물기부 부동산 등 관리의 용이성 제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등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있고 기부자의 기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부를 받을 당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지만 세무관서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한 판단이 옳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의 상담사례에서는 기부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손금산입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을 하여(서면 2팀-1699, 2005.10.21) 기부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어느 정도의 공제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기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 시가평가를 해야 하지만 거래 없이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은 시가평가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는 괜찮으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변제와 관련된 업무를 부탁하면서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채무부담 부분은 부담부증여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기부를 한 결과가 되는데, 부동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관련 업무처리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기타 조세를 부담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역시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의 산정일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가액으로 하는 등 업무처리의 단순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상장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처분이 어렵고 대개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상장되거나 기업상 현저한 상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가액으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45) 올댓뉴스, “경남은행, 국내 최초 ‘크리스찬펀드’ 출시, 상품설명회 열어”, 2007.12.26자.

(3)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 폐지 또는 완화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 있고,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⁴⁶⁾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과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주식소유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가 여부에 문제가 있다. 공익법인의 관리 문제는 어떤 물건을 기부 받느냐가 아니라 받은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에 있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점에서 5% 이상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초과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하는 현재의 입법태도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공익성 테스트를 거쳐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기부받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공익법인에서의 지출 행위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면세 혜택을 판단받도록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내국법인 주식의 5% 이상 취득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공익법인에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규정은 상속세법이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법률 제83조의2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으로 재벌기업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⁷⁾ 주식기부에 대해 제한의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90.12.31 이전 : 주식에 대한 규제 없음

46) 210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여 원이 부과되면서 재단 운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거액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세운 황필상 수원교차로 대표(61)는 "처자식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기부했는데, 나라에서는 기부자를 세금 포탈을 하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허탈해 했다. 황 대표를 만난 수원시 권선동 재단 사무실은 회의용 탁자만 하나 놓여 있는 단출한 공간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황 대표는 26세였던 1973년에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나중에 돈을 벌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젊은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이를 실천했다.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시 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원 등 총 210억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만든 것이다. 재단은 지난 6년 동안 41억여 원을 장학금,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세무서 측에서 증여세 140억원을 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 기부라도 주식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주식 증여액 대비 50%인 100억원과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금 40억원을 포함한 140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하고, 재단 주식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을 악용한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중 주식이 5%를 초과하고 100% 미만일 때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택순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장은 "2007년 말 당시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의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억울해 하는 것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법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 대표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재단을 설립했고 매년 일일이 예산집행을 보고했는데 이를 편법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증여세 부과 당시 세무서는 황 대표 사례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증여세 부과를 집행했다. 황씨가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단에 건전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황 대표는 "당시에는 5%라는 기준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냥 재단 설립 건은 아주대 측에 맡겼다"며 "아주대 쪽에서 회사 경영까지 맡는 걸 꺼렸기 때문에 주식 10%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작년 6월 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7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해 매월 임대료 1350만원을 받고 있다. 이 임대료는 그대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투명한 재단 운영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놓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또 9일부터 재단 웹사이트와 지원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황 대표는 "서양에선 기부가 흔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기부를 활성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막고 있다"며 "이제 기부하려면 세법부터 공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경제,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기부하려면 세법부터 알아야 하나요?, 2008.12.11자 참조.

47)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48.007.

- '91.1.1~'93.12.31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 '90.12.31 이전에 2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94.1.1 이후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⁴⁸⁾
 - '93.12.31 이전에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08.1.1 이후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다만, 20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2008.1.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주식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상속세법 등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⁴⁹⁾ 다만, 일본의 총무성에서 공익법인을 감독하기 위한 기준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총무성의 공익법인 지도감독기준⁵⁰⁾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 i. 운영재산의 관리운용은 해당 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자산(현금, 건물 등)을 제외하고, 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편 가능한 한 높은 운용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
- ii.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기업의 주식 보유 등을 할 수 없다.
 - ① 상기 1의 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공개시장을 통하는 등 포트폴리오 운용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재단법인에 있어서 자본재산으로서 기부된 경우
- iii. 2에 의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영리기업의 전체 주식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iv. 2의 이유에 의하여 주식보유 등을 행하는 경우(전체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영리기업의 개요를 기재한다.

4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相続稅法改正法律案(政府) 檢討報告", 1996.11, p.20에서는 이 개정예 반대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改正案은 公益法人의 보유주식 분산을 통해 公益法人이 出捐者의 持株會社로 간접지배 ·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이나, 改正案에서와 같이 株式保有總數의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방향 보다는 기업가가 公益法人을 통해 富의 社會還元을 하도록 유도하고 相続稅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相続稅의 富의 社會還元 기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同改正內容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봄"이라고 하였다.

49) 독일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공익적목적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의 주식기부와 우리나라의 주식기부의 차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공익재단 기부 막는 '후진세법'", 2009.1.1자 참조.

50) 公益法人の設立許可及び指導監督基準

상기의 지도감독기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용재산의 관리운용(공개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리스크를 분산한 투자수단)인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재단법인에 대한 기본재산으로 기부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한다.)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주식 이외의 성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9월말까지 처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식의 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영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그 보유비율은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2007년도 현재 일본의 공익법인 가운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단지 10%에 그친 반면 보유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 90%가 된다. 즉 전체 공익법인 24,648법인 가운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이 22,866법인으로 전체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782 법인 가운데, 포트폴리오 운용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456 법인, 기본 재산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877 법인, 법률에 의하여 지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수가 7 법인, 그 외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664 법인이 있다⁵¹⁾. 일본의 예에서 보듯 주식보유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취득 자체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익법인등에 대해 지주회사등의 우려 때문에 주식출연시 제한을 두는 것은 지금까지의 현행법의 변화, 일본의 입법례를 볼 때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⁵²⁾ 주식출연을 통한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며, 지주회사화의 우려라면 그러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보유를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의 하나이다. 주식출연을 통한 조세이외의 다른 수단 가능성에 때문에 세제 운영자체가 복잡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주식출연시 취득주식의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 폐지에 따른 지주회사 방지라는 원래 제도 도입의 문제는 주식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인정

세법상 기부대상은 자산만에 한정하므로, 자원봉사 등 용역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자원봉사의 경우 단체에서 이를 인정하면 바로 세제혜택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원봉사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이라도 기부금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는, 당해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외에 연예인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재능이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유명연예인이 포스터 촬영 등을 통하여 기부를 한 경우 광고촬영 대가로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할망정 촬영과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면 지나친 점이 있다. 액수 산정이 어렵다면 건당 50만의 기부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51) 日本 総務省, 『平成20年度 公益法人に関する年次報告』, 2008. p. 44.

52) 5%의 제한규정이 선의의 기업가가 공익법인에 더 많은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옥무석·이기욱, “학교법인의 과세문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4회 하계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08.7, p.88.

(5) 자산공제방법의 인정 등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기부금공제제도는 소득공제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소득은 작지만 고액을 기부하는 자산기부자에게는 기부금공제의 혜택이 거의 돌아갈 수 없다. 게다가 이월공제기간도 3년의 단기간이어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의미가 적다. 따라서 고액의 일시적인 기부를 활성화 하려면 일시적인 기부이든 아니면 정기적인 기부이든 세제가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기부액수에 비례한 공제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월공제 혜택을 좀 더 늘려주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자산공제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결국 입법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월공제의 경우 미국은 최대 15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인정함이 필요하다. 즉 자산공제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든지 선택하여 입법함이 필요하다.

○● 제2절 | 기부금 재분류

1. 평가

(1) 법정·특례·지정기부금 분류의 타당성

기부금의 재분류와 관련하여 우선 문제되는 것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분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는 기부금의 공제제도를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는 법정기부금(법인세법상 7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50% 또는 30% 공제되는 특례기부금 및 10%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공제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기부 받는 사람 내지 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이 높은 경우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곳에 대하여는 100%, 독립기념관 등과 같이 국가사업목적을 시행하는 곳으로서 공익성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50%,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것은 1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범위는 개인의 기부금 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보다 그 종류가 많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은 기부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기부받은 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단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공제혜택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더라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와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활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공익성이 더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현행 기부금 분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2) 각 공제한도의 적정성

미국의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현금 또는 현물자산)과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세법상 분류에 따라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50%, 30%, 10%의 3종류로 구분되는데, 어느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였고, 이 중 Public Charities,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직접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는 50%가 공제되었고, 자격요건을 갖춘 보훈 목적의 기부에 대하여는 1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했다. 이에 비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는 개인의 사업관련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공제로 산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주자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지정기부금한도 미달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기부금공제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으며, 공제한도도 너무 적고, 이월공제 혜택 등이 너무 짧다. 공제한도의 경우에도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간의 기능 등에 따른 차이(공공성의 정도)를 인정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큰데, 기능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종교단체 기부금 비율의 과다

전체의 기부액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려주는 통계자료가 있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2001)자료에 의하면 1999년 기부분야별 기부금액의 86.28%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블런티어21(2002)자료에 의하면 44.6%, (사)블런티어21(2005)에 의하면 신문사 방송사ARS에 이어 종교단체가 36.9%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⁵³⁾

최근 개신교 연구단체인 바른교회아카데미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개신교인과 목회자(88명) 등 49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정기적으로 십일조명목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결과를 추정해 결과 가구당 연평균 총헌금액은 344만 8천원, 18세 이상인 성인이 3명이상인 경우 가구당 연평균 총헌금액은 386만 4천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십일조와 별도로 교회건축을 위해 내는 건축헌금은 가구당 평균 50만 2천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개신교인의 경우 건축헌금을 포함하여 가구당 연간 395만원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위의 통계자료는 그 표본의 숫자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부금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다는 또 다른 자료와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바른교회아카데미의 자료에 의하면, 헌금의 우선적인 용처로 사회봉사와 구제(26%), 예배 및 교육활동(21.1%), 국내전도(10.9%), 해외선교(8.2%), 교역자 사례비(7.2%) 등을 들었다고 하며, 사회봉사와 구제 항목을 빼 다른 용처는 그 교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크게 보더라도 3분의 1 정도만이 종교적 색채가 없는 용처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실패이든 정부의 실패이든 점차 다양화되고 증대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맡기면 충분한 양이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민간비영리법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인 것이다. 이러한 민간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위한 재원은 결국 상당부분 기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또 그 중의 3분의 1정도만이 종교적 용처와 무관한 용도에 쓰인다는 현상은 바람직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집중의 정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판단의 문제이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부금공제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53) 블런티어21 자료의 경우 기부처가 중복되어 전체의 합이 130 내외이다.

54) 조선일보, "십일조 개신교인 52%..가구당 344만원", 2008.10.15자.

2. 개선방안

(1) 지출 기준에 따른 기부금 재분류

이미 본 바와 같이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이더라도 공익목적 사업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이러한 비용지출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 공급에 쓰인 것이므로 이러한 공공재 공급에 쓰인 직접 쓰인 비용에 기부하는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출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만 제약하지 말고, 예컨대 국세청의 활동테스트 등 일정한 기준을 넘는 비용지출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례 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손금산입비율을 좀 더 인정하는 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경우에 현행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과 같은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 직접 지출되는 비율과 관리비용 등의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행 특례기부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부금의 종류를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미국법에서와 같은 공익성테스트를 거치게 하면서 동시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증가시켜주는 방식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기부금단체와의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2)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의 구분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그 기부금 중 일부만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부금 공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의 유지에 마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조세의 중립성이 깨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종교활동에 대해 국가가 지원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을 구분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7년 1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①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100분의 10을 유지하고, ②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

조세의 중립성을 지키면서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도 같이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법정·특례·지정기부금의 항목 조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현금의 용처에서 보듯이 직접적으로 자선활동을 행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더 늘려주는 것 즉 현행 기부금 분류 체제에서는 법정기부금 내지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3절 |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1. 평가

이에 대해서는 2007년 개정 세법에서 상당 부분 입법화 되었다. 2007년 개정 세법의 내용만으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에 미흡함이 없을 정도이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법령의 미비가 아니라 법령의 홍보 및 법령에 따른 투명성 확보방안의 실질적 시행일 것이다.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으므로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점에서 현행 제도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선이 요구된다.⁵⁵⁾

2. 개선방안

(1) 공익법인 규모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감독 방법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령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법인에 대해 소액의 기부이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 등은 행정비용만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다못해 10,000원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 다든지 등 소액기부금에 대해서는 면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세제 혜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자치를 최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의무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법인의 인원이나 보유자산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규모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상법상 주식회사의 휴면회사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3-4월 사이에 출연재산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 결산서공시, 세무확인서 제출 등 다양한 신고가 몰려 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중신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하여는 ‘외

55) 투명성 제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서희열·심충진·조영탁,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8.6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GuideStar와 같은 CSIS을 도입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둘째, 공인회계사를 통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자의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강제 배정
 셋째, 국제청에 의한 기부금 관리 일원화
 넷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와 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
 다섯째, 비영리법인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

부전문가로부터의 세무확인'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2) 기부금 수입과 그 사용내역의 공시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기부금을 얼마나 받고 그 받은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 기부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자가 단체의 기부금 수입과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시화하는 것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09년부터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007년 3월부터는 민간단체인 가이드스타한국재단(www.guidestar.or.kr)이 설립되어 이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법인의 사업 및 회계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민간단체 개개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민간단체에 의한 자료공개는 미국,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 연방국세청(IRS)이 990 양식(Form 990)을 통해 자선단체와 재단이 제출한 자료 170만여 개를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을 운용하는 가이드스타(GuideStar) US에 제공하여 모든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 수입이 있는 단체들은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영국 및 웨일스의 자선단체 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협조하여 등록된 자선단체 16만8000여 개에 대한 정보를 가이드스타(GuideStar) UK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연간 1만 파운드 이상의 기부금 수입이 있는 자선단체들은 회계 공시의무를 가진다.

(3) 공익법인에 대한 관계법령의 단순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법령은 기부금품모집법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 공제 등 세제 혜택과 관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법령에 존재하는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세법상의 그것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면제 자격의 취득 및 유지 등에는 국세청에서 일괄하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회비 등 공익법인 지정 및 취소 사유의 완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은 결국 개인의 자산기부나 고액기부를 막는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비율은 3분의 1 정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금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그 대상은 공익법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관리하여야 할 것이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사유 회비·후원금비율 50%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4절 |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 구축

1. 평가

현행 기부세제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라기보다는 행정청의 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세제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부방식, 대상 등에서 법에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도 기부자의 기부의사에 따라 무조건 받기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부자의 의사와 적절히 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한 기부세제는 기부에 장애요인이 됨으로써 결국 기부를 감소시키고 기부 자체의 의미를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가 기부자의 의사와 조화되는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 기부를 행하는 동기가 반드시 세제혜택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세제혜택이 없더라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세제 이외의 기부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기부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만을 고려하여 기부세제 및 법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한 기부세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개선방안

(1)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의 인정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이 수증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익권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⁵⁶⁾ 현재 우리 세제는 예컨대 사업자가 공원부지를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리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입법정책에 의해 범위를 설정할 문제이지만 공원의 일부 예컨대 공원 내 매점 일부 등에 대한 운영권을 주는 방식 등 기부자에게 수익자 1인을 지정할 권한을 주는 방식 등의 기부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총 기부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권이 인정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기부 후 갑작스런 재산의 변동이나 배우

56) 영국의 억만장자인 애슈크로프트경(62)이 9억 파운드(15억6천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자선금으로 기부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보수당의 부의장인 애슈크로프트경은 11억 파운드의 유산 가운데 80%를 각종 자선사업에 쓰기로 했다는 것. 그의 기부금은 영국 역사상 최대규모라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애슈크로프트경은 저서 "더러운 정치 더러운 시대"의 에필로그를 통해 이같은 유산 처리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20년 전 크라이스트퍼라는 범죄 예방 단체를 설립하는가 하면 여러 자선단체와 학교들에도 수천만 파운드를 기부한 바 있다. 그는 유산의 20%는 3명의 자녀들에게 상속키로 했다면서 이들이 자신의 사후에 설치될 자선재단의 관리인들로 지정, 살아가는 동안 매우 만족스러운 일을 하게 된 만큼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애슈크로프트경은 자녀들도 예전부터 이런 뜻을 알고 있었다면서 "타인들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게 되면 때로는 거북하기만 하다. 아무나 점시에 소중한 것을 받아 담아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고 더 타임스는 덧붙였다. 조선일보, "영 억만장자, 천문학적 재산 기부", 2008.10.15자 참조.

자 기타 상속인 등에 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분쟁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과연 기부자의 단독재산인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고, 이혼시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질적으로는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데 명의가 기부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기부가 되었다면 배우자가 반대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정적으로는 그 자손들도 자신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민법개정안은 전체 재산 중 절반에 대해서 배우자공제를 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을 개시하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사해주는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기부 후 재산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부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부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자지정권을 수여하는 방안을 인정해 준다면 배우자나 자손들의 반대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기부자의 재산상태 변화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합리적인 범위는 입법상의 판단사항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 속한다면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세제혜택, 예컨대 수익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기부 받는 단체의 설립요건 완화

기부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존립시거나 해산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민법 40조 7호),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민법 43조), 설립등기에는 존립시거나 해산사유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나(민법 49조 2항)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부와 관련된 것이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쪽에 많다고 생각한다면 재단법인의 설립은 존속의 영구성을 전제로 하여만 설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는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예컨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강남교육청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만 설립을 허가하며 춘천교육청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만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

57)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총장 김인세)에 발전기금으로 쾌척하기로 했던 경암 송금조 태양 회장(사진)과 부인 진애연 씨가 3일 기부 약속 무효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이 이미 낸 돈을 기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놓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대학에 기부한 당사자가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송 회장 부부는 3일 부산대를 상대로 기부 약정한 305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낸 195억원 외에 110억원을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송 회장은 "오랜 고민 끝에 기부금이 원래 목적으로 양산캠퍼스 용지 대금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기부자의 최소한 요구도 무시당하는 우리나라 기부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부산대가 당초 기부 목적과 달리 송 회장이 이미 출연한 195억원 대부분을 다른 곳에 유용했기 때문에 2003년 10월 8일자 기부약정에 따른 기부금 305억원 중 잔금 110억원을 부산대에 출연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송금조 회장, 305억원 기부 무효소송 제기한 까닭은", 2008.7.3자 참조.

경이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므로(민법 제43조, 46조) 결국 기본재산을 그대로 두고 그로부터 나오는 재산의 수익으로 법인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리가 낮아서 최대 7% 정도의 금리를 가정 하더라도 5억원의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등은 3천 5백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법인 운영비 등을 제외 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액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예컨대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하여 매년 20분의 1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1억원의 재산을 출연하면서도 장학금 지급이라는 기부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공익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그 취지라면 기존의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기부자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20년간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조에서 관리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부하는 사람의 의사에 맞추어 법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3)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자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기부단체의 투명성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단체의 투명성은 기부금자료의 전산화 등과 전용계좌의 사용 등에 따른 투명성 등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최근 부산대와의 관계에서 문제된 사건이나⁵⁷⁾, 프린스턴대 사건⁵⁸⁾들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부한 돈의 용처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민법 45조 2항)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부약정에 따른 계약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공익을 위한 기부이니만큼 전적으로 계약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상당 부분 용처에 맞게 사용된다면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계약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기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산세나 가산금을

58)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대가 8억8000만 달러(약 800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부금의 용처(用處)를 놓고 "원래 기부 의도와 다르게 쓰였다"는 기부자와 소송에 휩싸였다. 미 뉴저지주 고등법원의 닐 슈스터(Shuster) 판사는 미국 내 대형 수퍼마켓 체인인 A&P의 로버트슨(Robertson) 가문이 프린스턴대와 벌이고 있는 기부금 사용 분쟁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문제의 기부금은 1961년 A&P의 창업자인 찰스 로버트슨의 부인 마리 로버트슨이 프린스턴대 '우드로 윌슨 국제문제대학원'에 기부한 3500만 달러(약 319억원)가 불어난 돈이다. 당시 마리 로버트슨은 기부금을 연방정부, 특히 국제문제 분야에서 일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로버트슨 후손들은 2002년 프린스턴대가 이 기부금의 사용 절차를 변경하자 소송을 냈고, 이후 기부금 회수(回收) 공방으로 확대됐다. 로버트슨의 후손들은 대학측이 당초 기부 의도와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해, 우드로 윌슨 대학원 졸업생의 극히 일부만이 공공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프린스턴대측은 "이 돈은 학교 측이 대학원생들에게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후손들이 기부금의 요건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슈스터 판사는 일단 양측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그는 프린스턴대가 기부금의 이자와 배당금, 투자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일부 승소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나 동시에 프린스턴대만이 이 기부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본(本)재판에서 다루겠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에는 프린스턴대가 기부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슈스터 판사는 또 로버트슨 후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재판은 기부금을 기부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둘러싼 역대 최대 규모의 송사가 될 전망이다. 소송 양측은 슈스터 판사의 결정문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본재판에서의 승리를 자신한다. 후손들은 이미 승소를 확신하며, 다른 대학들에 이 기부금을 제공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예일대도 기부자의 제공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2000만 달러를 되돌려준 일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조선일보, "기부금 8천억원 계운다면? 아찔한 프린스턴 대학", 2007.10.28자 참조.

추징함이 없이 다른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종전에 세제혜택을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부받는 단체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기부금의 용처를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5절 | 기부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개선방안

1. 기부를 한 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의 간소화

기부를 한 자에 대한 정산절차의 간소화는 최근 의료비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서 개인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이 공시하는 방안이다. 국세청은 기부금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전산자료를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10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사용)금액을 제공한다.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포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공제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금액 등이 그 예이다. '영수증발행기관→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국세청'으로 이어지던 연말정산 자료수집 과정을 '영수증발행기관→국세청'으로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혼인·장례비용,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시 기부금의 경우도 증빙서류를 간단히 하는 방안은 기부금 한 사람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기부금 소명자료 제출 전산화의 조화문제

(1)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의 확대

2007년 12월 개정시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하여,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기부 받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방안이다. 기부금 받는 액수의 정리 및 공시 필요는 인정되지만 기부하는 자와 과세관청에 대해 이중적으로 자료 제출 하는 것은 최대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익명 기부자의 처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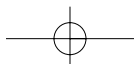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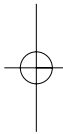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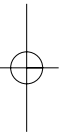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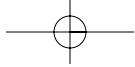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익명기부자의 처리문제인데, 기부하는 사람이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경우의 익명기부자에 대하여도 기부금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기부금을 출연하면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익명으로 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이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소명자료에 익명기부라고 처리하는 방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기부하는 자에 대한 절차간소화방안과의 충돌

기부하는 자에 대한 절차간소화방안과 기부받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방안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기부하는 자에 대한 절차간소화를 위해서는 기부하는 자의 모든 기부금이 전산처리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기부받는 자의 기부금 소명을 위한 전산자료 제출이 기부받는 단체로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모든 기부금액에 대한 전산자료 제출이 요구되므로 소액의 기부금이 많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모순되는 양자의 요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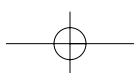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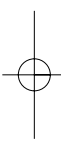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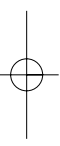
소액기부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부금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제로 처리하고 익명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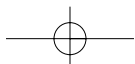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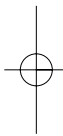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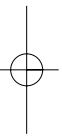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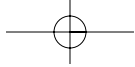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제6장



결론 : 정책적 제언





제6장 | 결론 : 정책적 제언

제5장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입법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5%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 증여로 의제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부분은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등에 대해 지주회사등의 우려 때문에 주식출연시 제한을 두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화, 일본의 입법례를 볼 때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 주식출연을 통한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며, 지주회사화의 우려라면 그러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보유를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의 하나이다.

둘째, 소득공제만을 인정하는 현행 세제는 고액의 자산기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산공제방법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든지 선택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은 3년의 이월공제기간을 인정하므로 이를 5년이나 10년 또는 15년 등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부금의 분류기준을 바꾸어 현행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경우에도 지출기준을 고려하여 특례기부금 정도의 혜택을 주거나, 특례기부금제도는 폐지하고 지정기부금의 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공제범위 100분의 15(제2호의 경우 20) 부분은 100분의 30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지정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에서 규정하는 '회비·후원금 비율 50%'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분의 1'로 개정함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사항은 기부관련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즉시 개정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기부관련 세제의 개편은 이러한 논의외에도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기부라는 것이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고, 재산의 이전에 대한 여러 복잡한 제도를 기부라는 하나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한 법 자체의 입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단

일화된 입법방식은 민법, 각 개별세법의 기본틀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주제별 입법방식이 해당 주제에 통일된 입법이라는 우수성과는 별개로 이러한 입법방식이 다수 채택되는 경우 특별법 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근본적으로 기부세제 내지 기부법제 자체에 대하여 이를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대한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기부된 이상 공익재산이므로 그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전자로 결정한다면 기부세제 내지 법제를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개편함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그 논의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8.
 김기열·변영선,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실무』, 삼일회계법·삼일인포마인, 2008.6.
 김완석, 『법인세법론』, (주)광고이텍스, 2008.2.
 _____, 『소득세법론』, (주)광고이텍스, 2008.2.
 김완일·고경희,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텍스코리아, 2008.3.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1.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상속세 및 증여세법(가제식)』, 2008.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2006』, 아름다운북, 2006.11.
 _____, 『기빙코리아 2007』, 아름다운북, 2007.11.
 _____, 『기빙코리아 2008』, 아름다운북, 2008.12.
 안병길·이병구,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해설』, 행법사, 1995.11.
 이광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7.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2.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08.2.

(2) 논문 및 보고서

- 강철희·양진옥, “비영리기관 온라인 기부 증액자의 기부 증액행동에 관한 연구-정기기부자의 증액빈도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1호, 2008.6.
 서희열·심충진·조영탁,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8.6.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2.
 옥무석·이기욱, “학교법인의 과세문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4회 하계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08.7.

(3) 기타자료

- 동아일보, “부자들 “기부강요 시달릴까봐 기부 꺼려””, 2008.9.19자
 매경이코노미, “[기부인식 설문조사] 40대 차장 인심 가장 후하네”, 2008.09.10자
 매일경제, “송금조 회장, 305억원 기부 무효소송 제기한 까닭은”, 2008.7.3자
 매일경제,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기부하려면 세법부터 알아야 하나요·””, 2008.12.11자
 울넷뉴스, “경남은행, 국내 최초 ‘크리스찬펀드’ 출시, 상품설명회 열어”, 2007.12.26자.
 조선일보, “십일조 개신교인 52%..가구당 344만원”, 2008.10.15자
 조선일보, “영 억만장자, 천문학적 재산 기부”, 2008.10.20자
 조선일보, “기부금 8천억원 계운다면·아찔한 프린스턴 대학”, 2007.10.28자
 조선일보, “공익재단 기부 막는 ‘후진세법’”, 2009.1.1자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fund.org>)

2. 외국문헌

(1) 단행본

金子 宏, 『租税法』(第十三版, 弘文堂, 2008.4.

日本・務省, 『平成20年度 公益法人に・する年次報告』, 2008.

Boris I. Bittker/Elias Clark/Grayson M.P. McCouch,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Ninth Edition, Thomson West, 2005.

Bruce R. Hopkins,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s, 8th ed., J. Wiley & Sons, 2004.

Marvin A. Chirelstein, Federal Income Taxation, a Law Student's Guide to the Leading Cases and Concepts, Nin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02.

(2) 논문

岩田陽子, “アメリカのNPO税制”, 레ファレン스, 2004.9.

Calum M. Carmichael, “Doing Good Better - The Differential Subsidiza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제 8회 ISTR(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국제회의 발표자료집, 2008.7.

(3) 기타자료

미국연방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일본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



02

종합토론

좌 장 박태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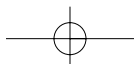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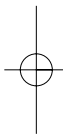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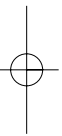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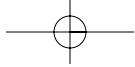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토론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前 한양대 교수)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前 국세청장, 前 행정자치부 장관, 前 건설교통부 장관)

전재현 (월드비전 후원개발본부장)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종합토론

나성린 |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前 한양대 교수

종합토론

윤재승 | 대웅제약 부회장,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종합토론

이용섭 | 민주당 국회의원, 前 국세청장, 前 행정자치부 장관, 前 건설교통부 장관

종합토론

전재현 | 월드비전 후원개발본부장

비영리 단체에서 모금을 하다보면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첫째는 기부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삶에 '희망의 생명'을 다시 갖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키워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둘 다 생명력이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기부자들을 한 아동을 돕는 후원자로 멈출 것인가. 좀 더 비전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지지자로서의 기부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요즘 기부자들은 기관운영에 있어 요구 사항도 많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의 편리성을 요구한다든지, 후원자 블로그·카페모임, 모니터링 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과 친밀감을 쌓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요구한다. 후원자의 만족은 곧 새로운 후원자(member get member)를 가져다줌으로 어떠한 마케팅 활동보다 기관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후원자의 만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월드비전은 창립59년 만에 처음으로 기관 소식지를 통해 '1월호'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냈다. 이유인 즉 정기후원자 31만명에게 발송되는 연말정산 서류 때문이다. 발송된 우편물이 본인에게 수령이 안 된 이유부터 후원자명의 변경, 타 단체와 비교해서 세제혜택이 다른 이유 등, 한 달 동안 모든 관리업무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였고, 그 동안 쌓았던 후원자만족도는 장시간 통화대기로 인해 한순간 불만족으로 바뀌었다.

기부금 정산기간 확대로 발생한 우편물의 미 수령으로 인한 문제나 기타문제들은 월드비전이 통제할 수 있지만 똑같은 아동후원인데 왜 어느 단체는 법정기부금을 적용하고, 월드비전에 기부하는 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차등을 받느냐는 질문에서부터 현행 세제 혜택의 불편한 진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길 요구하는 질문까지 월드비전이 통제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상당수였다.

1. 기부문화 활성화의 걸림돌 '유형별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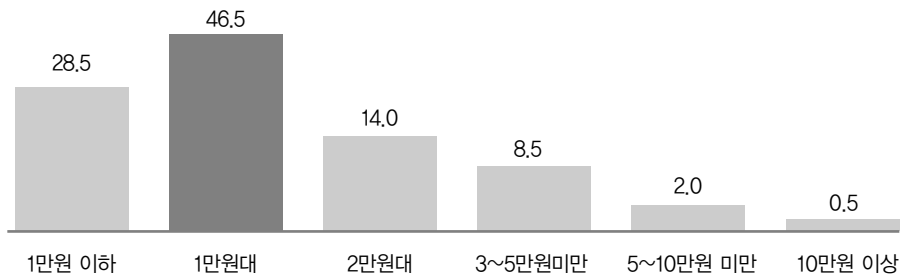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법정기부는 100%, 지정기부 15% 하면 얼핏 듣기에는 '똑같은 기부금인데도 어디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6배 이상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액 개인기부자들은 기부금의 환급세액 혜택이 동등하여 세법상 구분자체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1)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부 의사는 소액성금 주류

기업에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과정에서도 가장 선행하는 게 소비자조사이다. 구매자의 소비 특성을 알아야 하듯, 비영리기관의 기부활동에 있어서도 기부에 대한 인식이나 기존 기부자라 할지라도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아래 자료는 기부의사로 월평균 기부금액이 1만 원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주제발표 자료(p10)의 2007년도 국민전체 평균기부액 10.9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 적당한 월평균 후원금액으로 1만원대를 꼽은 응답자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만원 이하 28.5% 2만원대 14.0%, 3.5만원 미만 8.5%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사이의 응답자가,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종교별은 기독교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당한 월평균 후원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적당한 월평균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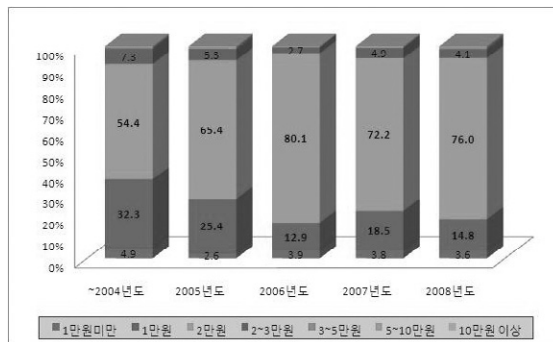


2) 실제 월드비전의 정기후원자 금액별 분포

위에서 조사된 것을 토대로 본다면 1만 원대의 기부자가 많아야 하나 월드비전은 92년부터 매월 2만원의 해외결연중심으로 마케팅활동에 비중을 둬서 기부자의 비중이 2만 원대에 집중 개발되어 있다.

1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실제 0.1%이므로 위의 의사 조사 그래프에서 1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사자 0.5% 비중과 유사한 것이 기부자의식이 그대로 기부활동에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만원미만	4.9	2.6	3.9	3.8	3.6
1만원	32.3	25.4	12.9	18.5	14.8
2만원	54.4	65.4	80.1	72.2	76.0
2~3만원	7.3	5.3	2.7	4.9	4.1
3~5만원	0.6	0.9	0.3	0.0	0.9
5~10만원	0.3	0.1	0.0	0.5	0.4
10만원이상	0.2	0.3	0.2	0.2	0.1



3) 근로소득자(개인)의 월 2만원 기부금 세액계산결과

기업의 문명이 돈보다 개미군단의 고사리 성금이 기부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한 기부 문화의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래 도표와 같이 소액 기부금의 소득공제 환급세액혜택이 실제로는 법정기부, 지정기부, 특례기부 모두 동일한 혜택으로 '유형별 지원제도'의 존재가 무색하다.

구 분	25,000,000	35,000,000	45,000,000
근로소득공제	-11,500,000	-12,750,000	-13,750,000
근로소득금액	13,500,000	22,250,000	31,250,000
기 본 공 제			
본 인	1,000,000	1,000,000	1,000,000
배 우 자			
부 양 가 족			
연 금 보 험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보 장 성 보 험			
교 육 비			
그 외			
법 정(100%)	240,000	240,000	240,000
특 례(50%)			
지 정(15%)			
환급세액혜택	0	0	0

구 분	25,000,000	35,000,000	45,000,000
근로소득공제	-11,500,000	-12,750,000	-13,750,000
근로소득금액	13,500,000	22,250,000	31,250,000
기 본 공 제			
본 인	1,000,000	1,000,000	1,000,000
배우자	1,000,000	1,000,000	1,000,000
부 양 가 족	-	1,000,000	2,000,000
연 금 보 험	1,000,000	1,300,000	2,000,000
건 강 보 험	800,000	1,000,000	1,200,000
고 용 보 험	100,000	160,000	200,000
보 장 성 보 험	-	-	1,000,000
교 육 비	-	-	1,000,000
그 외	-	-	-
법 정(100%)	240,000	240,000	240,000
특 례(50%)			
지 정(15%)			
환급세액혜택	2,464원	44,880원	44,880원

4) '유형별 지원제도'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ㄱ. 기부자들이 혼란

월드비전 내에서도 3가지 유형이 모두 존재(복지관, 긴급구호 기부는 법정기부, 도시락후원은 특례기부, 아동후원은 지정기부)

ㄴ. 세제혜택에 차이가 없음에도 소액기부자들은 '100% 세제혜택을 받는' 법정기부단체를 우선 신뢰, 법정기부 단체는 이를 홈페이지에 광고.

ㄷ. 지정기부 단체 기부자들 '후원해지 발생'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모든 모금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선의의 경쟁해야

세제혜택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모금전문기관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하는 것이 기부문화 발전에도 바람직하다. 특정모금기관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부단체는 고객으로부터 집중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때 옳은 성장이라고 본다.

월드비전을 비롯해서 많은 비영리모금기관들은 오늘도 선의의 경쟁을 한다. 요즘은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생겼다. 창립한지 5년 정도 되는 단체도 자생력을 가지고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성장하고 있다.

월드비전도 최근 5년 동안 개인후원자가 4배 성장했다. 거의 대다수 소액정기 기부자들로 후원에 참여한 주요한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63.1%),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위해서 (19.2%) 라고 한다.

기부의 확산은 조세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것 같다. 특정기관만을 법정기부단체로 계속 화초처럼 가꾼다면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기부자들은 "사업을 잘하는 곳"보다는 국가가 100% 세제 보장해주는 단체를 우선 찾게 되는 것이다.

2) 세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가 되려면

개인 기부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부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지만 세제혜택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현행 개인 소액기부자들의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아니라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이지만 국세청 전산망에 매년 기부금이 누적되어 일정시점에 일괄공제해 주는 것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투명성 강화와 기부금 사용의 효과성이 전제되어야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은 법정기부단체나 지정기부단체나 사실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통제 시스템 속에서 감독을 받고 있으며 법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매년 회계 법인으로부터 정기회계감사와 기부금품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청지기 핫라인 등 통제시스템을 운영하며 등 공익법인의 사업 및 회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기부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 연구회, 복지프로그램 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기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을 보면 대한민국은 △ 2018부터 인구감소 △고령화 및 노인빈곤화 △사회 고학력화 △사회 양극화 심화라고 발표하면서 각각의 변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네 가지 변화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사회활력과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증하게 될 복지수요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질것으로 예상되지 않겠는가, 기부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제도가 개선되고 시스템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종합토론

하승수 |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1. 우선 개인 기부관련 세제의 현황과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2. 큰 틀에서 보면, 현행 개인 기부 관련 세법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너무 복잡해서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제하신 두 분 교수님들도 지적한 것처럼 현행 기부금 분류체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구분을 정비해야 하고,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의 편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부금의 분류가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익성의 정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21세기에 정부의 역할이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에 비해 더 공익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기부금의 분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게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는 법체계를 개선해서 좀 더 간소하고 쉬운 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대상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도 일관된 원칙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여처럼 조직과 운영에 관한 공통된 요건을 만들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의적인 정부의 개입·통제를 방지하고 민간의 공익활동과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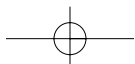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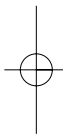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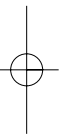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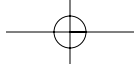
둘째,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부의 대상이 된 자산(ex. 주식)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점, 고액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식기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면, 주식기부를 받는 법인(단체)가 기부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건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부를 받는 법인(단체)이 주식을 보유하기보다는 처분해서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그 법인(단체)의 수익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확보된 수익을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좋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기부에 대한 현재의 규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객관적인 검증장치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서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주식기부에 대한 현재의 통제장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식기부와 관련해서는 발제자들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개정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건과 제한비율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소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고액의 자산을 기부한 기부자의 경우에는 기부로 인해 받는 세제혜택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제하신 두 분 교수님들이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적절한 선을 찾는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한편 현행 세법이 여러 투명성 보장 장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예외(결산서류 공시, 전용 계좌 개설의무 등을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그 종교단체의 최소한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자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세제혜택이 무원칙하게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발행일 | 2009년 2월 3일

발행처 | 아름다운북

발행인 | 박상중

등록일 | 2006년 10월 25일 제300-2006-150호

지은이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 소 |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전 화 | 02) 766-1004

전 송 | 02) 730-1243

웹사이트 | www.beautifulfund.org

인 쇄 | 해든디앤피 02)2266-6372

